

현안분석 2008-

비교법제 연구 08-04

FTA체결에 따른 남북한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FTA 적용영역과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를 중심으로 -

최원목 · 박찬호

FTA체결에 따른 남북한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FTA 적용영역과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를 중심으로 -

**How to Amend Domestic Laws o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pursuant to
the Conclusion of FTAs**

- Focusing on the scope of application clauses of FTAs and
the issue of rules of origin of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

연구자 :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교수)

Choi, Won-Mog

박찬호(부연구위원)

Park, Chan-Ho

2008. 9.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 요약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남북한관계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는 바, FTA 적용의 지리적 범위 조항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FTA 적용범위 조항의 경우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 조항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에 FTA를 시행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조항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판정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WTO 통일원산지 규정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WTO협정을 비롯한 다자통상규범 위반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역외가공 인정 기준의 채택으로 복잡성이 증가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므로, 우리 나름대로 일종의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마련하여 역외가공 인정 기준을 통일화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법상의 남북경협의 정당화논리인 “민족내부거래” 논리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한편, 북한산 반입제품에 대한 무관세조치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향후 체결될 한국과 여러나라와의 모든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에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유사한 내용의 특별예외규정을 그때그때 삽입해나가는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법제의 정비를 통해 남북한관계에 관한 특별조항의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과 협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남북한 특혜교역에 대한 WTO

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 획득이나, 남북한 지역무역협정 체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키워드 : 남북한관계, 개성공단사업, 남북경협, 개성공단제품 원산지규정,
FTA와 남북교역, 민족내부거래

Abstract

Clauses o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have been prescribed in several FTAs to which Korea is party. Those clauses include provisions on the geographical scope of application of FTAs and provisions on rules of origin of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scope of application clauses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comparable claus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us, it is not necessary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implement the FTAs.

As there is no substantive discipline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WTO Agreements, the rules of origin clauses for the Kae-sung products do not raise any WTO inconsistency problem. Notwithstanding this WTO consistency, complexity arising from different rules among FTAs tends to increase costs of doing business for the business community engaging in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It is recommended therefore that a set of model rules of origin for Kae-sung products should be made out, based upon which Korea can negotiate FTAs with other countries in a uniform manner.

Furthermor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ra of whole-sca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Korea must discard the fallacious logic that the South-North Korean trade is not subject to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WTO jurisprudence because it is an "intra-nation trad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ased upon this logic must be amended accordingly. Replacing this logic, Korea must strive to justify the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by inserting a special justificatory provision in each FTA that Korea concludes from now on. This special provision may read as follows:

“Taking into account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ing ou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the other Party] agrees that it shall not object to adopting, maintaining or applying special arrangements by the two economies with respect to the trade between them.”

As the number of such FTAs increases, the South-North Korean trade will be justified by more countrie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 Key Words: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ules of Origin of products manufactured in Kae-Sung Industrial Complex, FTA and South-North Korean trade, intra-nation trade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II.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11
1. FTA의 적용영역 규정	11
2. 헌법 영토조항과의 관계 분석	12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19
1. 개성공단 사업 현황과 관련법제 현황	19
2. 우리가 체결한 FTA상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분석	22
3.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28
가. 민족내부거래 개념	29
나. 민족내부거래 논리의 국제법적 문제점	30
다. 남북한간 원산지 합의서와의 관계	38
라.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	40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51
1. 미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52

가. 비특혜원산지규정	52
나. 특혜원산지규정	60
2. 중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83
가. 비특혜원산지 규정	83
나. 특혜원산지 규정	87
3. 일본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89
4. EU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94
가. 비특혜원산지 규정	94
나. 특혜원산지 규정	97
V. FTA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107
1. 역외가공 예외 인정관련 국제협상을 위한 표준 원산지기준의 수립	107
2. “민족내부 거래” 논리의 국내법적 수정 및 국제적 지지 획득노력 전개	108
VI. 결 론	115
부록 1: 한-EFTA FTA상 특별 영역원칙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	119
부록 2: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123
부록 3: 미국-싱가폴 FTA 상의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품목	153
참 고 문 헌	167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남·북한관련 국내법제는 기본관계 설정법제로부터 외교안보·국가보안 관련 법제 및 경제협력 관련 법제까지 매우 다양하며,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법제들 중 우리가 외국과 FTA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관 관련 국내법제의 정비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의 FTA체결 정책이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과의 FTA 체결을 본격화함에 따라, FTA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과의 경제협력 및 중장기적인 경제통합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남북한관계 관련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는바, 영토조항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FTA상대국과 국제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한 것이므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은 남북한 관계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법규의 내용이 FTA상의 관련 문구의 국제법적 해석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의 우위문제는 물론 FTA의 이행에 있어 상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규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남북한 관계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고 관련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들의 원산지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FTA체결 및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FTA 적용범위와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 한정하여 이들 사항에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관한 FTA 조항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한 후,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FTA 남북한관련 조항과 조화를 이루고 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적으로 해외조명을 받는 시대를 맞아 국내법제를 국제법 체제와 상응하도록 개선해나감으로써 국제적 분쟁발생의 소지를 줄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우리정부가 앞으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 남북한 관계 조항을 일관되게 삽입해나가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능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교역·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FTA의 남북한관계 조항의 적용에 따른 구체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1. FTA의 적용영역 규정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의 FTA 적용영역 규정의 정의조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FTA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따른 육지, 해양 및 상공,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 규정하고 있다.¹⁾ 이러한 정의는 한-싱가폴FTA에 그대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주권 하에 있는 육지·해양 및 영공,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다.²⁾

한-EFTA FTA에서는 “당사국의 영토·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 밖”³⁾이라 정의되어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는 조항 이외에 특별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⁴⁾

1) 한-칠레FTA 부속서2.1 (“with respect to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under it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2) 한-싱가폴FTA 제2장 (“with respect to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under it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3) 한-EFTA FTA 제1.2조 (“(a) to the land territory, internal waters, and the territorial sea of a Party, and the air-space above the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b) beyond the territorial sea, with respect to measures taken by a Party in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4) 한-ASEAN FTA 제1.2조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II.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한-미FTA상의 한국영토의 정의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 정의되어 있다.⁵⁾

한편, “국민”의 정의와 관련, 한-칠레FTA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관련법에 정의된 한국인”이라 규정⁶⁾하고 있으며, 한-싱가폴FTA도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국내법에서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이라 정의⁷⁾하고 있는데 비해, 한-미FTA에서는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정의하고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각주를 달고 있다.⁸⁾

2. 헌법 영토조항과의 관계 분석

위 모든 FTA상의 정의에 따르면, 남한지역의 영토, 영해, 대륙붕 등이 한-미FTA 적용대상 지역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북한지역에 대해 FTA가 적용될 수 있는가이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는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종속되어야 할 영역임을 천명

5) 한-미FTA 제1.4조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s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6) 한-칠레FTA 부속서 2.1

7) 한-싱가폴FTA 제2장 (“a Korean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domestic laws.”).

8) 한-미FTA 제1.4조 (“a Korean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ity Act”) 및 각주 2 (“A natural person who is domiciled in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n the Korean Peninsula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9) 헌법 제3조.

한 것이며, 일종의 ‘입법관할권(legislative jurisdiction)’의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의 문제인 것이다.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선언하고,¹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¹¹⁾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이 분단상태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 실제로 행사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남북통일을 헌법적 의무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칠레FTA와 한-싱가폴FTA에서는 FTA의 영역규정을 각각 “[대한민국의] 주권에 따른(under its sovereignty)” 영역과 “주권하에 있는(under its sovereignty)” 영역이라는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는바, 이것은 실제로 주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정당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즉, 입법관할권으로서의 주권보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북한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고, 만일 북한정권이 북한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비록 한국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은 한국정부가 보유한 것이므로 위 정의상의 FTA가 미치는 영역의 범위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칠레나 싱가포르가 우리와 FTA를 체결하면서 북한산제품에 대해서까지 FTA특혜관세를 제공할 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영토조항은 그 의도에 정확히 일치하는 식으로 문안이 작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헌법 전문.

11) 헌법 제4조.

II.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한-EFTA FTA의 “당사국의(of a Party) 영토“와 한-ASEAN FTA의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는 표현도 북한지역을 FTA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며, 반드시 북한지역을 제외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한-미FTA 상의 영토규정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영토”라 표현되어 있어, “주권의 보유”가 아니라 “주권의 행사”여부에 따라 FTA의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현재 북한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분명한 점은 우리가 북한 영토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러한 해석이 우리헌법 평화통일 조항체제하에서도 가능하므로, 북한영토에 대해 한-미FTA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북한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지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 이미 1991년 8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안이 통과되고 9월 17일 제46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남북한 UN가입안이 15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박수 속에 통과됨으로써,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독립된 주권 및 관할권을 갖는 국가로 승인된 것이기 때문이다.¹²⁾ 결국 한-미FTA의 적용범위는 남한지역 영토, 영공,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지역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법에서 정의된” 국민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 한-칠레 및 한-싱가폴 FTA와는 달리, 한-미FTA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을 그 정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12) UN헌장에 따르면, “국가(state)”만이 UN회원국이 될 수 있다. UN헌장 제3조 및 4조.

고 볼 수 있다. 결국 한미FTA상의 정의조항이 FTA체결 주체들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적용범위 조항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 …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로행위로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즉, 한-미FTA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은 FTA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으로 인정되게 되는데,¹³⁾ 한-미FTA의 규정내용처럼 한국의 “영역”의 범위에 “배타적경제수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게 되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은 일단 모두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심지어 제3국 선박이 UN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 연안국의 잉여 수산물을 채취할 권리¹⁴⁾를 획득하여 입어료를 내고 한국의 배타

13) 한-미FTA 제6.1조.

14) UN해양법협약 제62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총 어획허용량(entire allowable catch)을 정하고 자국의 어획가능량이 이를 소화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국가들의 잉여자원의 어획을 허용할 의무를 진다. 동 협약은 이에 관한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rticle 62.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1. The coastal State shall promote the objective of optimum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61.
2. The coastal State shall determine its capacity to harvest the living resource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here the coastal State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harvest the entire allowable catch, it shall, through agreements or other arrangements and pursuant to the terms, conditions, laws and regu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give other States access to the 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 having particular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69 and 70,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eveloping States mentioned therein.
3. In giving access to other States to its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this article, the coastal State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inter alia, the

II.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적경제수역 내에서 획득한 수산물 까지도 한국 원산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단, 한-미FTA에서는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의 종류에 대한 한정적인 열거규정을 두어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significance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area to the economy of the coastal State concerned and its other national interests, the provisions of articles 69 and 70, the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in the subregion or region in harvesting part of the surplus and the need to minimize economic dislocation in States whose nationals have habitually fished in the zone or which have made substantial efforts in research and identification of stocks.

4. Nationals of other States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comply with the conservation measures and with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These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and may relate, inter alia, to the following:

- (a) licensing of fishermen, fishing vessels and equipment, including payment of fees and other forms of remuneration, which, in the case of developing coastal States, may consist of adequate compensation in the field of financing, equipment and technology relating to the fishing industry;
- (b) determining the species which may be caught, and fixing quotas of catch, whether in relation to particular stocks or groups of stocks or catch per vessel over a period of time or to the catch by nationals of any State during a specified period;
- (c) regulating seasons and areas of fishing, the types, sizes and amount of gear, and the types, sizes and number of fishing vessels that may be used;
- (d) fixing the age and size of fish and other species that may be caught;
- (e) specifying information required of fishing vessels, including catch and effort statistics and vessel position reports;
- (f) requiring, under the authorization and control of the coastal State, the conduct of specified fisheries research programmes and regulating the conduct of such research, including the sampling of catches, disposition of samples and reporting of associated scientific data;
- (g) the placing of observers or trainees on board such vessels by the coastal State;
- (h) the landing of all or any part of the catch by such vessels-in the ports of the coastal State;
- (i)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joint ventures or other cooperative arrangements;
- (j)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personnel and the transfer of fisheries technology, including enhancement of the coastal State's capability of undertaking fisheries research;
- (k) enforcement procedures.

5. Coastal States shall give due notice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을 적시하고 있으므로,¹⁵⁾ 한국 또는 미국의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에게만 한-미FTA상의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제3국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입어료를 지불하고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문제는 한-미FTA 관할사항 이외의 문제이므로 국내법과 국제적 합의에 의해 규율될 문제라 볼 수 있으나,¹⁶⁾ 위 한-미FTA에서의 규정 방식은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한가지 한-미FTA 영역조항과 관련 문제시되었던 사항은 한-미FTA 5월 25일자 공개본에서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which it exercise sovereign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으로 되어있던 조항이 최종서명본에는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으로 문구가 수정된 것과 관련한 논쟁을 들 수 있다. “행사하는”이 “행사할 수 있는(may)”으로 수정된 것과 관련, 독도의 영해에 대한 주권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도 및 그 영해의 한국 영역 여부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자초한 문안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¹⁷⁾ 이러한 견해는 한-미FTA 영역조항에 관한 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영역조항 전단의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의 해석으로 이미 독도와 그 주변 수역 12해리는 한국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

15) 한-미FTA 6.22조 참조.

16)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공통의 국제적 합의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17) 송기호, “한미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2] ‘독도 조항과 ‘중국 조항’,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 article_num=30070705101014 참조.

II.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며, 후단 규정인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 행사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독도 주변의 영해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¹⁸⁾ 최종서명본에 추가된 ‘국제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이란 문구는 한국이 아직까지 주변국과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측면을 반영한 문안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이상의 모든 FTA상의 협정적용의 지리적 범위 조항이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 조항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에 FTA를 시행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추후 우리가 체결하는 FTA에서는 가급적 한-미FTA상의 적용범위 조항과 같은 문안을 일관되게 채택하여 당사국들의 입법의도와 해석이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FTA를 맺지 않은 제3국 선박이 정당하게 조업하여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제화를 통해 통일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18) 또한, UN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독도와 같이 자생적인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섬은 영해 이외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UN해양법협약 제121조.

Ⅲ.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1. 개성공단 사업 현황과 관련법제 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는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제품생산단지를 건설 중이다. 이는 2011년 까지 개성시 일대의 총 2000만평을 개발하며, 이중 공단지역인 800만평은 3단계에 걸쳐 개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입주업체는 2천개이고 고용인원 25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제품 생산단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12월말 현재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완료 등 1단계 개발(2003-2007년)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¹⁹⁾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다. 특히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개성공단에는 2008년 8월말 현재 총 79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이후 2008년 8월말까지 누적생산액은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고 그 중 수출액은 약 8.7천만 달러이며, 북한 근로자 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연도별 생산액은 2005년 1,490만달러, 2006년 7,373만달러, 2007년 12월말 현재 1억 8,477만달러로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⁰⁾

이러한 사업을 위해 2002년 12월 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19)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추진현황 <<http://www.unikorea.go.kr>>

20) Ibid.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제3국으로 나가는 물자, 또는 북한내 기관이나 기업 등에 위탁가공하는 물자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²¹⁾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이 지구를 통한 해외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남북간에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및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법제화작업을 진행하였다. 개성공업지구내의 기업들은 “공업지구 밖의 북한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북한내 기관 및 기업에 원자재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²²⁾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동 제품의 원산지 판정의 문제에 있어 북한산 원자재 사용 및 위탁가공을 통한 가치 창출 활동의 평가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 표 1: 개성공단사업 추진관련 법제현황 >

제정 일자	법제 내용
02.11.20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02.12.8 (05.8.1 발효)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03.4 - 06.11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03.8.20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04.1.29 (05.8.1 발효)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07.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1)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33조.

22)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39조.

그동안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 이러한 제품들의 원산지를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 특혜 교역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는 남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측면에서 국제통상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공식적으로 천명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제3국에 대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내세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적인 측면에서의 효력을 지닐 뿐인 이러한 “민족내부 거래” 논리가 과연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원산지는 제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국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판정방식에 관해서는 각국별로 상이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실체법적으로 규율하는 국제법규도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즉, WTO ‘원산지에관한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은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으나, 절차적 투명성 및 필요성에 입각한 최소한의 규율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수출품에 대해 각국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할지 또는 북한산으로 판정할지, 아니면 제3국산으로 판정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국의 국내법과 판례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현재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개성공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수용가능성이 있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국제법인 WTO 원산지에관한협정에 대한 면밀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한 분석을 진행하여 그 한계를 확정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을 위한 다자, 지역, 양자적 노력의 국제적인 수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우리가 체결한 FTA상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분석

우리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FTA에는 개성공단관련 규정이 없다. 반면, 한-싱가폴FTA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에 관한 특별 원산지규정을 두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판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래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려면 한국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정한 상품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한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개성공단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 한-싱가폴FTA상 역외 가공의 예외가 적용되는 상품>23)

제8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17291000, 3917292000, 3917299000, 3919100000, 3919900000, 3921904020, 3921905090	
3921906010, 3921906030, 3921906090, 3921907010, 3921907030, 3921909020, 392190903	
3923210000, 3923290000, 3923400000, 3923500000, 3926101000, 3926102000, 392610900	
제84류	전자정보처리장치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15820000, 8421219020, 8422201000, 8422302000, 8422303000, 8422304000, 8424301000,	
8424302000, 8424309000, 8427901000, 8437909000, 8451280000, 8467210000, 8480490000,	
8481201000, 8481202000, 8482100000, 8483501000	
제85류	전기기기류 그 부분품, 녹음기와 송신장치 텔레비전기 영상 및 송신기 기록기류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201000, 8501202000, 8501311010, 8501312000, 8501313000, 8501313000, 8501314000	
8501342000, 8501351000, 8502311000, 8502391000, 8502394000, 8502400000, 8504211000,	
8504219010, 8504221000, 8504229010, 8504229000, 8504311000, 8504319010, 8504344000	
8504349010, 8505111000, 8505191000, 8509200000, 8513101000, 8513109000, 8514101000,	
8514201000, 8514309000, 8515211010, 8515311010, 8515319010, 8516210000, 8516290000,	
8516310000, 8516330000, 8516602000, 8516791000, 8516799000, 8518210000, 8518220000,	
8518490000, 8518500000, 8519991010, 8519992020, 8520331000, 8520332000, 8520339000,	
8520391000, 8520399000, 8522100000, 8523300000, 8524600000, 8525401090, 8526101000,	
8526199000, 8527199000, 8527299000, 8527399000, 8527399000, 8528129012, 8528129022, 8528129031	
8528129042, 8528129042, 8528129090, 8528131000, 8528139010, 8528139020, 8528139030,	
8528139090, 8539221000, 8539290000, 8539310000, 8539321000, 8539390000, 8539410000,	
8539491010, 8539491000, 8540720000, 8540790000, 8540891000, 8540892000, 8540893000,	
8540899000, 8543300000, 8543200000, 8546101000, 8546101000, 8546104000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5201000, 8905202000, 8905209000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경사기기·경밀기기류 미표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100000, 900610000	

23) 한-싱가폴FTA 부속서 4C.

아울러, 위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을 거쳐 한국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²⁴⁾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ii)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이고, (iii)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 되거나 제4.16조의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치고, (iv)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v)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그리고 (vi)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²⁵⁾

즉, ‘비원산지 투입가치: 원산지재료 가치’의 비율을 ‘40: 45%’로 정하고, 최종 공정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EFTA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 인정을 위한 아래와 같은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모든 상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외가공의 예외(영역원칙의 면제)의 조건으로는 “(i) 총 추가가격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ii)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칠 것”²⁶⁾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한 영역원칙 면제의 조건으로 다음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4)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한-싱가포르FTA 제4.4조 2항.

25) 한-싱가포르FTA 제4.4조 1항.

26) 한-EFTA FTA 제13조, 한-EFTA FTA 부속서 I의 부록 4, 제1항.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i)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ii)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재수입된 재료 또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일 것.”²⁷⁾

이처럼 한-EFTA FTA에서는 한-싱가폴 FTA에 비교해서, ‘비원산지 투입가치: 원산지재료 가치’의 비율이 ‘40: 45%’에서 ‘40: 60%’로 상향 조정되어 한국이 원산지인 재료가 더 많이 개성공단에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그대신, 역외가공 인정제품의 목록(부록 1)에 의류 및 신발제품이 대거 추가되었고, 철강, 시계, 잡품 등이 추가되었으며, 최종 공정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충분공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므로 개성공단 내에서 생산을 마무리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EFTA국가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ASEAN FTA 상품분야 협정에서는 역외가공의 인정조건으로 아래가 규정되어 있다.²⁸⁾

“수출을 위해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의 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요하지 않는, 제1항 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상에 기재된, 제6조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본다.

- (1) 비원산지상품의 총가격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27) 한-EFTA FTA 부속서 I의 부록 4. 제2항.

28) 부속서 3 제6조.

2. 우리가 체결한 FTA상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분석

또한 이러한 역외가공이 인정될 수 있는 품목도 ASEAN 각 구성국 별로 HS 6단위로 100개씩 그 목록이 정해져 있다(부록 2 참조). 한국은 이 목록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ASEAN측은 이를 충실히(in good faith) 고려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ASEAN 회원국 “국내 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키거나, 어떤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결정”되는 경우 특별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여, 역외가공 인정조치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지조치는 2월 전에 한국에 통지되어야 하고 의견교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으며, 중지 빈도 및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보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자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연례검토의 대상이 되며,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 ASEAN 회원국이 자국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재량적으로 역외가공 인정 제도를 철회할 수 있다.²⁹⁾

이처럼 한-ASEAN FTA에서는 ‘비원산지 투입가치: 원산지재료 가치’의 비율인 ‘40: 60%’를 채택하고 한국 내에서 불충분공정 이상의 마무리 공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은 한-EFTA FTA의 방식과 같다.

그러나, ASEAN 각 회원국별로 별도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목록을 마련한 점이 상이하다. 각 회원국 별로 국내사정에 따라 민감한 제품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역외가공 제도의 인정을 보장하고 ASEAN 국가들의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

29) 한-ASEAN FTA 부속서 3 제6조에 관한 교환각서.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하는 경우 역외가공 제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ASEAN국가들의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의 생산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역외가공 인정 목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역외가공 인정 문안이 한-미FTA에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 관한 부속서를 두어, 이 위원회가 역외가공 지역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며, 그 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기준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역외가공지역들의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문제가 정치적 사안에 이용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 및 그 외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³⁰⁾ 또한, 노동기준 및 관행에 관하여 그 기준이 국제기준(ILO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에 관하여도 그 수준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비핵화 개념은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폐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비핵화지대의 개념은 남북한 내의 모든 핵무기 폐기는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미FTA협정문 분석보고서, 106면, 2007.

2. 우리가 체결한 FTA상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분석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또한 구체적인 ‘비원산지 투입가치: 원산지재료 가치’의 비율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들은 한-미 양국에 권고되며,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양 당사국이 국회의 승인을 거쳐 한-미FTA를 개정해야 역외가공이 인정되게 된다.³¹⁾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협정 발효 1주년에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모임에서 역외가공지역 기준들을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개성공단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울러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기준들을 반영하여 한-미FTA를 개정하여 역외가공 인정에 관한 조항을 마련한 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므로, 양국 의회에서의 협정 개정 승인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는 개성공단 상품 원산지 문제와 관련, 장기적이고 미 확정적인 조건들을 선언하고 미래의 합의에 위임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표 3: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역외가공 인정 내용 비교 >

FTA 상대국	적용대상 상품	비원산지 투입가치: 원산지 재료가치 (%)	한국내 최종공정(또는 불인정공정 이상) 요건	기 타
칠 레				
싱가폴	플라스틱,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전기 기기, 녹음기, 텔레비전 영상 기록기, 선박과 수상	40 : 45 %	O	

31) 한미FTA 부속서 22-나 참조.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FTA 상대국	적용대상 상품	비원산지 투입가치: 원산지 재료가치 (%)	한국내 최종공정(또는 불인정공정 이상) 요건	기 타
	구조물,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의료용기기 등			
EFTA	플라스틱, 고무, 가죽, 의류, 신발, 유리, 귀금속, 철강, 비금속 공구, 원자로, 보일러, 전기기기, 철도부속품, 광학기기, 영화용기기, 의료용기기, 시계, 잡품	40: 60 %	X	
ASEAN	각 국별 100개 품목	40: 60 %	X	- 목록 추가 가능 - 산업피해시 중지제도 - 5년간 보장
미 국				한반도 역외 가공 위원회 구성합의

3.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그동안 일반적인 남북한 특혜교역의 정당화 근거로 한국내부에서 제기되어온 것은 “민족내부 거래” 논리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교역은 특수관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의 민족내부의 거래이므로 각종 국제법적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은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논리를 선언하고 있다.³²⁾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확대 적용하게 되면, 남북한 경제협사업의 근간인 개성공단 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민족내부 사업으로서의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의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한국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³³⁾은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³⁴⁾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되어온 “민족내부 거래” 주장이 과연 성립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아울러 민족내부 거래 논리를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가. 민족내부거래 개념

그간 국내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민족내부거래”이므로 WTO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지되어 왔다. 1992년의 ‘남북합의서’에서도 남북한 무역거래가 남북간의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라 규정하고 있어 ‘국가간’의 무역거래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³⁵⁾ 이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된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32)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681호, 제5조.

33) 2007.5.25 제정 법률 8485호.

34) Ibid., 제3조 4항.

35) ‘남북합의서’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 ‘남북합의서’의 전문은 남북한 관계가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따르면,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⁶⁾ 이에 한국은 국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이러한 합의서 및 국내법에 따라 남북한은 상호간의 경제교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로 물자교류, 관광사업, 경수로사업, 위탁가공무역 등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해온 것이다. 이러한 민족내부거래 논리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수용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민족내부거래 논리에 근거한 북한산 수입물품에 대한 무관세 처분과는 달리, 북한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입부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어 여타 국가로의 수출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민족 내부거래라는 스스로의 기본입장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나. 민족내부거래 논리의 국제법적 문제점³⁸⁾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양국간 무관세 대우 이외에도 각종 특혜의 교환이 수반된다. 특히, 이는 많은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특혜의 부여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특혜는 상기와 같은 남북한 합의 및 국내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제법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남북합의서’ 제15조도 “남과 북은… 민족내부교류로서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제1조 10항.

37) 제26조 2항 및 동 시행령 50조 2항, 3항.

38) 이 부분은 필자의 논문인 “최원목,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국제법학회 논총 제47권 제3호, pp.4-8”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음.

우선 남북한 경제협력상의 무관세교역은 비록 북한이 WTO회원국이 아닐지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의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GATT 제I조는 최혜국대우 의무가 “WTO회원국(any contracting party)”이 다른 WTO회원국에 부여한 대우 뿐만 아니고 WTO비회원국(“any other country”)에 부여한 대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우 한국이 북한에 부여한 무관세대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WTO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해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관세면제 조치이외의 각종 남북한 경제협력조치가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WTO보조금협정’에 의하면 정부(A국)가 수출을 조건으로 특정산업에 지원을 하는 경우 ‘금지보조금’이라 규정하여 이러한 지원을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⁰⁾ 이러한 지원이 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WTO회원국 산업의 A국으로의 수출 및 제3국 수출을 “대체(displace)하거나 저해(impede)”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A국이 이러한 지원을 철회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⁴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한국 정부가 물류비나 투자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에 의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반입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

39)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GATT 제1조 1항.

40) WTO보조금협정 제3, 4조 참조.

41) WTO보조금협정 제6, 7조 참조.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될 수가 있는데,⁴²⁾ 이에 대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해오고 있는 한 WTO회원국이 이러한 한국의 보상조치 때문에 자국의 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음을 이유로 한국의 보상조치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91년 7월 한국이 남북한간의 구상무역형태로 쌀을 대북지원할 당시 미국측이 남북한 거래의 국제법적 합치성 문제를 제기해오면서 이와 관련하여 GATT상의 ‘의무면제(Waiver)’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³⁾ 특히 북한산 물품은 미국의 ‘대적성국무역법’⁴⁴⁾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산 물품에 대해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한반도의 주변국에게 민감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논리를 아래에 제시해 보고 이들 각각의 논리의 타당성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해 본다.

첫째, 상술한 ‘남북합의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한간의 거래는 GATT 제I조가 적용되는 국가 (“country”)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헌법’에도 북한은 한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라 규정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상에도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원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42) 조명철외,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년 7월), 105쪽.

43) 1991년 4월 한국정부는 남한의 쌀과 북한의 시멘트 및 무연탄간의 직접교환 형식의 구상무역을 승인하였다. 이에 곧바로 미국의 관련 업계 및 당국이 국제법과의 충돌문제를 제기하였다. 1991년 4월 12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외경제신문 등 참조. 박노형,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2000.10.) <<http://www.korea.ac.kr/~intplaw/wto.htm>>, 1쪽 참조.

44)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은 국내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닐 뿐이어서 GATT 최혜국대우의무라는 국제법규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도 “협약당사국은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⁵⁾ 더구나 ‘WTO설립협정’은 “각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 및 행정절차를 WTO협정규정과 합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한편, 북한과 맺은 ‘남북합의서’ 내의 민족내부거래 조항을 ‘조약(treaty)’이라 보더라도 양자조약의 효력은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한국은 제3국의 다자조약(GATT)에 기한 의무위반 주장을 양자조약의 규정을 원용하여 막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민족내부거래 주장은 다른 회원국들의 ‘WTO보조금협정’ 위반 주장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즉, 민족내부거래 주장은 북한을 한국의 영토의 일부라 보는 것인데(“One Korea”) 이는 위탁가공무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물류비나 투자비에 대한 보상이 국내산업에 대한 보상임(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러한 특혜를 받고 북한에서 가공되어 한국으로 반입된 물품이 수입품이 아니고 국내 생산품이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해외원조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국내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한 셈이 되는 것이며, 이는 WTO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것이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출이 결과하는 다른 WTO회원국의 수출에 대한 “대체(displace) 또는 저해(impede)”효과 및 “이익(benefit)의 무효화(nullify) 또는 손상(impair)” 효과들에 대한 책임을 한국정부가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45)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80년 1월 27일 발효) 제27조.

46) WTO설립협정 제XVI조 4항.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둘째, 한국이 북한을 국가승인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이 북한에 부여한 특혜는 GATT 제I조상의 “타 국가(any other country)”에 대한 특혜 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제도에 근거한 것이어서 전항의 국내법에 기한 주장보다는 진실보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미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에 동시에 가입한 상태이고, 130여개 국가와 동시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을 명시적으로 국가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국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WTO협정은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⁴⁷⁾ 이렇게 볼 때, WTO협정상 가장 기본적인 조항인 GATT 제I조가 상호 국가승인 절차를 밟은 국가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WTO에 가입한 중국이 또 다른 WTO가입국인 대만에 특혜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화(GATT 제I조 적용을 배제)시키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독립된 관세영역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GATT 제I조는 남북한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이상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주장으로 ‘유엔헌장’상의 민족자결권을 원용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⁴⁸⁾ 즉,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민족자결권”(self-determination of people) 행사의 일환이며, 유엔헌장상 이러한 민족자결권이 유엔회원국의 기본적 권리로 보호되고 있으므로⁴⁹⁾ GATT 제I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47) WTO설립협정 제XII조 1항은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가 WTO회원국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8) 조명철외, *supra* note 32, pp.100-123은 이러한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49) 유엔헌장 제1조 2항은 유엔의 기본목표 중 하나로 “민족자결원칙에 기한 국가간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용되는 민족자결권 개념이 남북한간 특혜의 교환을 합리화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최혜국대우 위반과 민족자결권의 상관관계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남북한간의 특혜의 교환이 민족자결권의 행사로 합리화된다면, 세계 각국이 자국과 민족이 같은 타국과 특혜를 교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셈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WTO체제를 회원국 단위가 아닌 ‘민족’단위로 재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민족자결권에 기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유엔헌장 규정이 GATT규정보다 상위규정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비록 유엔헌장 제103조가 유엔헌장의 최고성을 선언하고 있기는 하나,⁵⁰⁾ WTO의 유엔에 대한 독립성을 고려해볼 때 유엔헌장의 민족자결권에 관한 규정이 GATT 제I조에 우선한다는 해석은 적어도 WTO분쟁해결절차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민족내부거래’ 논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전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회원국들의 WTO보조금협정 위반 주장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논거는 1979년 GATT 체약국단이 결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에 관한 허용조항’⁵¹⁾ 및 1999년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결정’⁵²⁾일 것이다. 이중

의 우호관계 증진”을 들고 있다. 또한, 유엔헌장 제55조는 민족자결의 원칙하에서 국제적 경제· 사회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50)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유엔헌장 제103조.

51)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L/4903 (Decision by GATT Contracting Parties, 28 November 1979). 이를 흔히 “Enabling Clause”라고 부른다.

52)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L/304 (Decision on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후자는 개도국이 최빈개도국들에게 특혜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한 WTO회원국들의 결정인데, 그 수혜대상국가는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으로 규정되어 있다.⁵³⁾ 그런데 문제점은 UN에서 작성한 최빈개도국 목록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⁵⁴⁾ 따라서, ‘1999년 결정’이 한국이 북한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대우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⁵⁵⁾ 참고로 2000년도에 행해진 UN 경제사회이사회 최빈개도국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일인당 GNP 900 달러 미만, 인구수 7천 5백만 이하, 건강·영양·교육·문맹률·경제 취약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⁵⁶⁾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상기 기준

Waiver, 15 June 1999).

53) “...least-developed countries designat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Id. para.1.

54) 일반적으로 WTO에서는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여부를 자국이 스스로 선언(self-selection)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그러나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은 UN에서 분류하는 최빈개도국 목록에 따르고 있다. 이 UN 분류에 따르면, 최빈개도국으로서 거론되는 국가는 아래의 49개국이다.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udan, Togo, Tuvalu,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anuatu, Yemen, Zambia. 이 중 WTO회원국은 30개국이며, WTO 가입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은 8개국(Bhutan, Cape Verde, Ethiopia, Laos, Samoa, Sudan, Vanuatu, Yemen), 그리고 Equatorial Guinea와 Sao Tome & Principe 는 WTO observer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 Understanding the WTO: Least-Developed Countrie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7_e.htm; <http://www.un.org/special-rep/ohrlls/ldc/list.htm>>>

55) 한국정부는 2000년 4월 WTO에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방침(WT/COMTD/N/12)을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위 1999년 WTO결정을 인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위 통보문에도 한국은 북한을 수혜대상국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통보하고 말았다. WT/COMTD/N/12, Annex I.

56) “A. a low-income criterion, based on a three-year average estimate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under \$900 for inclusion, above \$1,035 for graduation); B. a human resource weakness criterion, involving a composite Augmented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APQLI) based on indicators of: (a) nutrition; (b) health; (c) education;

을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북한을 최빈개도국 목록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편, ‘1976년 결정’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도국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체제(GSP)에 입각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이 UN이 분류한 최빈개도국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나 ‘개발도상국’임은 분명하므로 한국은 상기 규정에 입각하여 북한상품에 대해 무관세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선진국임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WTO사무국에의 통보 및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차적 통제가 따르며, 북한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⁵⁷⁾ 또한 제3국이 이의를 제기할 때, 이들 국가와 즉시 협의를 하여 적절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⁵⁸⁾

그리고 이 방안은 북한이 개도국의 지위에 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무관세대우(GSP) 이외의 다른 형태의 북한에 대한 특혜부여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허용조항은 남북한 특혜교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정당성 확보의 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족내부 거래” 논리는 그 정당성과 국제적 수용성이 결여된 허구의 논리이며, 남북한 특혜교역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국제법적 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에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경우는 1951년 GATT에 가입할 당시 동서독의 거래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and (d) adult literacy; and C. an economic vulnerability criterion, involving a composite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based on indicators of: (a) the in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b) the instability of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c) the economic importance of non-traditional activities (share of manufacturing and modern services in GDP); (d) merchandise export concentration; and (e) the handicap of economic smallness (as measured through the population in logarithm).” <<<http://www.un.org/special-rep/ohrlls/ldc/list.htm>>>.

57) Enabling Clause, footnote 3, paragraph 4(a).

58) Ibid., paragraph 4(b).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GATT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아 두었고,⁵⁹⁾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경제 통합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특혜교환을 일정시점까지 정당화하는 특별 조항이 GATT 자체에 삽입(제XXIV조 11항)되어 있으므로,⁶⁰⁾ 동·서독 및 인도·파키스탄간의 특혜교역은 비위반청구 문제를 제외⁶¹⁾하고는 국제법적인 문제점이 없게 된다.

결국,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우 WTO회원국들이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특혜부여에 대해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주장 및 보조금협정에 기한 청구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내부 거래 논리가 허구적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원산지 인정을 주장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국제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남북한간 원산지 합의서와의 관계

한편, 이러한 원산지 판정 문제는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으로의 반입 시에도 발생하게 됨은 물론이다. 2003년 7월 31일 체결된 ‘남북사이에

59) “The CONTRACTING PARTIES further agree tha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 of the General Agreement the acces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ll not require any modification in the present arrangements for, or status of, intra-German trade in goods originating within Germany.” GATT Contracting Party Decision, ACCESS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1 June 1951, para.1(b).

60)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양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온 사실을 고려하여, GATT상의 제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GATT 제XXIV조 11항. 이 조항은 1947년 8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직후 시점인 1947년 9월에 개최된 ‘제네바회의’(Geneva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에서 GATT문안으로 추가된 것이며, 그후 1954-1955년의 GATT개정심사 회의(Review Session)시 인도와 파키스탄 대표의 주장에 따라 그대로 존속되게 된 것이다. GATT Analytical Index, p. 829.

61) WTO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는 의무면제 신청국이 면제를 부여받는 경우에도 이에 의해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된 제3국의 비위반청구(non-violation claim)에 기한 보상청구로부터 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Understanding in respect of Waivers of Obligations under the GATT 1994’.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⁶²⁾는 남북한 거래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⁶³⁾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북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62) 2000년 12월 서명되고 2003.8.18 남북간에 발효된 4개 경험합의서(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 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위해 채택됨.

63)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위의 규정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해당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남한은 동 제품을 북한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자체가 북한에서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을 기준으로 북한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3국에 대해서는 북한 영토 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거나 민족내부 거래 논리에 의해 무조건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주장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원산지 판정문제는 ‘민족내부’ 거래 여부와는 무관한 기술적인(technical) 판단문제이므로, 한국이 개성공단 수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민족내부 거래’ 논리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논리의 개발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모색을 위해서는 우선 WTO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의 내용과 적용범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

GATT 제IX조는 원산지 표시(marks of origin)제도의 시행에 있어 “최혜국대우(MFN)를 준수”할 것과, 동 제도를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에 한해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⁴⁾ 또한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거나 지역명(regional or geographical names)에 해를 미치는 식으로 상호(trade names)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⁶⁵⁾ 즉,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최소한의 규율을 하고 있는 셈이다.

64) GATT 제IX조 1항, 2항, 4항.

65) GATT 제IX조 6항.

GATT 제VIII조는 “수출입과 관련한 수수료 및 형식요건(formalities)”에 대해 규정하면서 “수출입 형식요건의 요구 빈도와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관련문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선언하고 있다.⁶⁶⁾ 이에 동 조항의 주해는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도는 “엄격히 필수불가결한 정도(to the extent that is strictly indispensable)”에 머물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⁷⁾

(1) 비특혜원산지규정⁶⁸⁾ 관련

위 GATT의 규율내용을 좀더 상세화시킨 것이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다. 동 협정은 우선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Working Programme”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원산지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원산지에 관한 협정은 동 협상의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 “1) 통일비특혜원산지규정이 GATT 제I, II, III, XI, XIII조상의 최혜국대우의 적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목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 차별적 수량제한이나 관세율할당,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의 목적상 동일하게 적용될 것,
- 2) 상품이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wholly obtained) 국가 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될 것,

66) GATT 제VIII.1(c)조.

67) Interpretative Note 2 to Article VIII.

68) 원산지규정은 그 규정이 속한 무역제도의 목적에 따라 ‘특혜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된다. 비특혜규정이란 특혜관세 제도 운용과 무관한 원산지 규정으로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 목적의 원산지 규정, 반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의 부과, 셰이프가드 등의 통상조치를 위한 원산지 규정, 검역제도상의 원산지별 수입제한 제도, 수출물품 원산지결정 기준, 무역통계목적을 위한 원산지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할 것,
- 4) 원산지규정을 무역정책 수행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규정 자체가 무역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 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위해 부당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전제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
- 5) 일관성 있고(consistent), 통일적이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될 것,
- 6) 논리적인 일관성(coherent)이 있을 것,
- 7) 적극적인 기준(positive standard)에 근거할 것.”⁶⁹⁾

이러한 원칙하에서 원산지에관한협정은 실질적인 변형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보충적으로 부가가치 기준(ad valorem percentages), 제조공정기준(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등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⁷⁰⁾ 이상과 같은 통일원산지 규정 신설에 관한 기준 및 원칙과 더불어, 원산지에관한협정 제2조는 통일원산지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WTO회원국이 준수해야할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WTO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을 내림에 있어,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관련되는 세 번을,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그 계산방식을, 제조공정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당해 공정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 2) 원산지규정이 사용되는 무역정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원산지규정 자체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69) 원산지에관한협정 제9조 1항.

70) 원산지에관한협정 제9조 2항.

- 3) 원산지규정 자체가 국제무역에 제한적, 왜곡적, 또는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원산지 판정을 위해 부당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전제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국내산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해서는 안된다.
- 5)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있고(consistent), 통일적이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6)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기준(positive standard)에 근거해야 한다.
- 7)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규, 사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내용은 적절히 공표되어야 한다.
- 8)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15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이 내려져야 하며, 판정의 효력은 사실관계 및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comparable) 3년간 유효하여야 한다.
- 9) 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10)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취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중재·행정재판이나 절차에 의한 재심절차를 허용해야 한다.
- 11) 비밀정보는 보호된다.”⁷¹⁾

위의 의무는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WTO회원국이면 누구나 당장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여부와 관련하여 위의 의무사항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만일 WTO회원국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있어

71) 원산지에 관한 협정 제2조.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한국은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1) 특정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판정이 근거하고 있는 세번, 부가가치 또는 제조공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 부당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전제조건을 부과하여 교역을 왜곡하고 저해하는 경우
- 3)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규정과 타 수입제품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간에 차별을 가하거나, 자국산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 4) 동일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번은 북한산으로 판정하고 다른 경우는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등 판정에 있어 일관성을 잃은 경우
- 5)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기준(적극적 기준)이 없이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기준(소극적 기준)만을 설정해 놓고 이에 근거하여 서만 원산지 판정한 경우
- 6)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 7)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8)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대한 재심절차를 불허하는 경우
- 9)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제출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주목할 점은 위 WTO원산지에 관한 협정 제2조 하의 의무사항들이 WTO회원국들의 원산지 판정의 실제적 사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원산지 판정의 절차적 요건이나 투명성보장 요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통일원산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각국이 어떠한 **실체적 기준**을 채택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인 기준에 입각하고 있고 무역제한적이지 않으며 일관되게 적용되며 일정한 재심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한, 그 유효성은 부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하느냐 한국산으로 판정하느냐는 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는 한 전적으로 각국이 자국의 원산지 규정에 입각하여 재량적으로 판정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A국은 북한산이라 판정하고 B국은 한국산이라 판정하며, C국은 중국산이라 판정하더라도 이에 대해 한국은 WTO협정에 기한 항변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WTO원산지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르면, WTO 통일원산지협상이 타결되어 통일원산지 규정이 마련된다면 그 이후로는 제품을 “완전히 획득한(wholly obtained)” 국가나 “최후의 실질적인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국가가 원산지국이 되어야 하므로,⁷²⁾ 이러한 기준과 다른 실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해 한국과 북한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72)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 제3조 (b).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2) 특혜원산지규정⁷³⁾ 관련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은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을 등에 그치고,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부속서 II)를 두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 WTO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을 내림에 있어,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관련되는 세번을,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그 계산방식을, 제조공정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당해 공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합의(agree to ensure)한다.
- 2)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기준(positive standard)에 근거해야 함을 보장하는데 합의한다.
- 3)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규, 사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내용을 적절히 공표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합의한다.
- 4)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15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이 내려져야 하며, 판정의 효력이 사실관계 및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comparable) 3년간 유효함을 보장하는데 합의한다.

73)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이란 ‘수입물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 한 국가가 특정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우대 하는 경우(일방적 특혜규정)와 국가간 협정에 의해 당사국 쌍방이 상호 우대하는 경우(쌍방적 특혜규정)가 있다. 일방적 특혜규정이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처럼 '71년부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캐나다 및 동구권 국가로부터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으며, 2000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48개국) 8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비부과 제도, EU 및 미국 등의 해외속령이나 과거 식민지에 대한 특혜제도 등의 운영을 위한 원산지 제도는 이러한 일방적 특혜 원산지 규정의 예이다. 이에 비해, 쌍방적 특혜규정이란 FTA 및 관세동맹(Customs Union)에서처럼 지역무역협정의 구성국간 상호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원산지규정이다. 기타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GSTP), ESCAP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방콕협정),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TNDC) 등이 있다.

- 5) 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데 합의한다.
- 6)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취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중재·행정재판이나 절차에 의한 재심절차를 허용함을 보장하는데 합의 한다.
- 7)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합의한다.”⁷⁴⁾

주의할 점은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 제2조 및 3조상의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율내용 중, 1) 원산지 규정 자체가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2) 원산지 규정 자체가 국제무역에 제한적, 왜곡적, 또는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원산지 판정을 위해 부당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전제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3)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국내산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해서는 안되고, 4)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있고 (consistent), 통일적이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명시의무, 적극적기준 근거 의무, 공표의무, 재심기회 부여, 비소급적 적용, 비밀보호 의무”와 같은 순수하게 형식적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인 “무역정책수단화 금지, 비차별 의무, 일관적 적용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위 규정내용을 개성공단 제품 이슈와 연결시켜 보기로 한다. WTO 회원국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원산지 제품이 아님을 판정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FTA의 당사국인 칠레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이에

74)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 부속서 II, 3항.

III.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이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칠레측이 상기의 명시 의무, 공표 의무, 재심 기회 부여, 비소급적 적용, 비밀 보호 의무 등 순수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게 되는 것이다.⁷⁵⁾ 즉, 칠레측이 어떠한 실체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 했는지 간에,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기준을 일관성 없게 적용하고 차별적이고 무역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⁷⁶⁾

< 표 4: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의 규율 내용 >

	비특혜원산지 규정		특혜원산지에 관한 선언 규정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전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후	
명시 의무	O	X	O
무역 정책 수단화 금지	O	X	X
무역 제한화 금지	O	X	X
비차별	O	O	X
일관적 적용	O	O	X
적극적 기준에 근거	O	X	O
공표 의무	O	O	O
판정 지연 금지	O	O	O

75) 더구나 이러한 형식적 사항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로 합의한다(…agree to ensure that…)”라는 식의 어구를 사용하여 그 준수가 강제성을 띠기 보다는 다소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Annex II의 제목도 “Declaration”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76) 물론 이런 경우 한-칠레 FTA상의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사항이다.

3.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비특혜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에 관한 선언규정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전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후	
규정 변경 불소급	O	O	O
재심 허용	O	O	O
비밀 보장	O	O	O
모든 목적상 동등 적용	X	O	X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	X	O	X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통일원산지 규정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판정의 실제적 기준은 WTO협정의 관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 양자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요국의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여 고찰한 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해외에서 어떻게 판정될지를 예상해보고 필요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개성공단을 단순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한 후, 한국을 비롯한 수입국들이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경협이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산 재료가 어떻게 가공되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야, 최종 완성품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한국 및 재료 수입국들로 판정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최종 완성품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 재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토협약은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지침(guideline)을 포함하고 있다.⁷⁷⁾ 이 지침에 의하면 완전 획득 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각국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선언되어 있다. 즉,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국가가 원산지국이 되며,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기준, 세 번 변경

77)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May 18, 1973, 1975 Gr. Brit. TS No. 36 (Cmnd 5938) (entered into force Sept. 25, 1974). 약칭 Kyoto Convention이라 불리우는 이 협약의 Annex D.1에 원산지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기준, 특정 제조공정 기준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산지 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각국은 다소 상이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수출될 수 있는 주요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의 원산지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방안을 기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참고하여 개성공단 제품 생산 관련 규칙이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의 사업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1. 미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가. 비특혜원산지규정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은 전통적으로 판례법(common law)상의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즉, 제품을 전적으로 한 국가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됨은 물론이나, 다른 나라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실질적 변형’을 이루어 최종 제품을 생산해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국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때, ‘실질적 변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제품의 형태, 형상, 본성 또는 특성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변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해 제품이 최초로 제조, 생산 또는 배양된 국가에서 수출될 때의 가치와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의 가치가 부가된 경우”라고 판시되어 왔다.⁷⁸⁾

78) “Substantial transformation means fundamental change in form, appearance, nature or character of article which adds to value of article an amount or percentage which is significant in comparison with value which article had when exported from country in which it was first manufactured, produced or grown.” *U. S. v. Murray*, C.A.1 (Mass.) 1980, 621 F.2d 1163, certiorari denied 101 S.Ct. 112, 449 U.S. 837, 66 L.Ed.2d 44. 실질적 변형 기준은 Gibson-Thomsen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Co., Inc.*, 27 C.C.P.A. 269, C.A.D. 98 (1940))에 의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현재 19 C.F.R.

이러한 관례법상의 포괄적 기준에 대한 구체적 해석의 명확화와 일관성을 위해 그동안 미국정부는 특정한 분야에서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 변형 기준을 명문화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당해 정책목적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하여 왔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원산지표시(marking) 관련, ‘1930년 관세법’은 “미국으로 수입된 외국산 제품 및 그 용기는 그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표시방법 및 예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⁷⁹⁾ 이때,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에 대한 정의 조항은 연방행정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아래와 같이 내려져 있다.

“제품의 원산지국이란 미국으로 진입하는 외국산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배양지국(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을 의미하며, 여타국에서 행해진 추가적인 제조나 재료가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가져와야만 이러한 여타국이 원산지국이 된다.”⁸⁰⁾

134.35(a)에 원산지표시 의무 예외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입되어 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질적 변형이론의 배경 원칙에 대해서는 AnheuserBrewing Ass'n. v. United State 판례에서 대법원이 재수출상품(drawback goods)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가 있으며 (AnheuserBusch Brewing Ass'n. v.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Hartranft v. Wiegman 에서도 인용된 바가 있다. Hartranft v. Wiegman, 121 U.S. 609 (1887).

79) 19 U.S.C.A. 1304 (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

“(a) Marking of articles :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every article of foreign origin (or its container, as provided in subsection (b) hereof)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shall be marked in a conspicuous place as legibly, indelibly, and permanently as the nature of the article (or container) will permit in such manner as to indicate to an ultimate purchaser in the United States the English name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article.”

80) 19 C.F.R. 134.1 - (b) “Country of origin. “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 however, for a good of a NAFTA country, the NAFTA Marking Rules will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19 C.F.R. 134.0 - “This part sets forth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country of origin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즉, 미국은 원산지 표시의 목적상 “실질적 변형”기준을 명문화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NAFTA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criterion)’을 중심으로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였다.⁸¹⁾

둘째로, **최혜국대우 부여** 목적상 필요한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양허표의 주석 3(General Note 3 to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이 규정하고 있다. 동 주석에 따르면, 1) 양허표상 Column 1의 “Special subcolumn”, 2) Column 2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및 3) 미국속령(Insular Possessions)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일정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all products other than those of countries enumerated…)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rate)이 부과되게 된다.⁸²⁾ 따라서, MFN관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제품의 원산지가 Column 1의 Special subcolumn 및 Column 2에 속하지 않는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북한 제품(products of … North Korea)”에 대해서는 Column 2의 관세율이 적용되게 됨을 주의해야한다.⁸³⁾ 따라서, 미국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북한 제품”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Column 2의 초고율의

marking requirements and exceptions of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ogether with certain marking provisions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81) NAFTA회원국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별도의 규정인 ‘NAFTA Marking Rule’(19 C.F.R. 102)이 적용되어, 완전 획득(wholly obtained) 기준 및 세번변경(tariff shift)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소기준(de minimis), 화학반응 기준(chemical reaction origin rule; Chapters 28, 29, 31, 32, 38에 대해 적용), 일정한 포장재료·악세서리·도구·비상용준비품목·간접재료 관련 규정, 불인정 공정 규정(non-qualifying operations) 등이 적용된다. 19 C.F.R. 102.11 - 102.2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NAFTA Marking Rule이 전통적인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Gibson-Thomsen rule’이 보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입장이다. *CPC International Inc. v. United States*, 933 F. Supp. 1093 (Ct. Int’l Trade 1996).

82) 즉, Column 1의 ‘General subcolumn’ 국가제품에 대해서 MFN관세율이 적용된다.

83) General Note 3 (b) of HST. 원문은 “products of the following countries ... Cuba, Laos, North Korea”라 되어 있다.

관세율이 적용되고⁸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lumn 1의 MFN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MFN관세율의 운용 - 즉, 당해 수입품이 Column 1 ‘General subcolumn’ 국가의 제품인지 Column 2 국가의 제품인지에 대한 판정 - 은 전통적인 “실질적 변형” 기준에 입각해 내려지게 된다.

셋째, 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당사국이므로 동 협정상의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대상품목(eligible products)”을 판정해야 한다.⁸⁵⁾ 이에 미국법은 “대상품목”을 “미국이 당사국인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상품(또는 서비스)”이라 정의하고 있다.⁸⁶⁾ 이는 GPA가 GPA당사국간에만 적용되는 협정이므로 당연한 정의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려면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일종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이다. 미국법은 이러한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규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역시 실질적 변형 이론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국이란 제품을 전적으로 배양, 생산 또는 제조한 국가, 또는 당해 제품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 재료의 이름, 특성 및 용도가 변경되어 새롭고 다른 제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⁸⁷⁾

84) Column 2의 세율은 Column 1의 General subcolumn의 세율에 비해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배의 고율의 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85) Para. 1-101, Executive Order No. 12260 (“The obligations of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pply to any procurement of eligible products by the Executive agencies listed in the Annex to this Order...”).

86) The term “eligible product” means... a product or service of that country... which is covered under the Agreement for procurement by the United States.” 19 U.S.C.A. 2518 (4) (A).

87) 19 U.S.C.A. 2518 (4) “(B) Rule of origin. An article is a product of a country or instrumentality only if (i) it is wholly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that country or instrumentality, or (ii) in the case of an article which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materials from another country or instrumentality, it has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넷째,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별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 1) 한 나라에서 “완전 획득(wholly obtained)”된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⁸⁸⁾
- 2) “yarns”(threads, cordage, twine and similar products 포함)은 “fibres”를 “spun”하거나 “extruded”한 곳이 원산지국이 된다.⁸⁹⁾ (*yarn forward rule*).
- 3) “fabric”의 경우에는 “fibers”나 “yarns”을 “woven”하거나 “knitted”한 곳이 원산지국이 된다.⁹⁰⁾ (*fabric forward rule*). 즉, “fabric”의 경우에는 직조이후의 공정(dyeing, printing 등 finishing steps)을 수행한 곳이 원산지로 인정되지 못한다. 다만, “silk, cotton, man-made fiber, or vegetable fiber”로 분류된 “fabric”의 경우에는 당해 “fabric”이 “dyed” 및 “printed”되고 아울러 일정한 마무리공정(bleaching, shrinking, fulling, napping, decating, permanent stiffening, weighting, permanent embossing, or moireing)중 둘 이상이 행해진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⁹¹⁾ (*DP2 rule*)
- 4) “yarns” 및 “fabric” 이외의 섬유제품의 경우는 이러한 제품이 한 국가에서만 “전적으로 봉제된(wholly assembled)” 경우 그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⁹²⁾ (*single country assembly rule*). 즉, 단순히 재단만 한 국가는 타국에서 봉제된 제품의 원산지국이 되지 못한다. 그 예외로, “labels, badges, quilted textile products, diapers, handkerchiefs, shawls, scarves, mufflers, blankets, linen, curtains, sacks, tents,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so transformed.”

88) 19 U.S.C.A. 3592, (b) (1) (A).

89) 19 U.S.C.A. 3592, (b) (1) (B). 즉, 방사국이 원산지가 된다.

90) 19 U.S.C.A. 3592, (b) (1) (C). 즉, 방직국이 원산지가 된다.

91) 19 U.S.C.A. 3592, (b) (2) (B). 이를 “DP2 rule”이라 부른다.

92) 19 U.S.C.A. 3592, (b) (1) (D). 즉 봉제국이 원산지가 된다.

cloths”을 비롯한 일정한 품목⁹³⁾의 경우는 한 국가에서만 봉제된 경우에도 이러한 봉제국가가 아니고 ‘yarn forward rule’ 또는 ‘fabric forward rule’에 의해 원산지국이 결정된다.⁹⁴⁾ 또한, “textile or apparel product which is knit to shape”의 경우에는 “knit”한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⁹⁵⁾ 단, 일정한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6117.10, 6213.00, 6214.00, 6302.22, 6302.29, 6302.52, 6302.53, 6302.59, 6302.92, 6302.93, 6302.99, 6303.92, 6303.99, 6304.19, 6304.93, 6304.99, 9404.90.85, or 9404.90.95)이 이러한 관세분류하에서 “cotton”, “wool” 또는 중량기준으로 “cotton”을 16 % 이상 포함하고 있는 “fiber blends”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dyed” 및 “printed”되고 아울러 일정한 마무리공정(bleaching, shrinking, fulling, napping, decatizing, permanent stiffening, weighting, permanent embossing, or moireing)중 둘 이상이 행해진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⁹⁶⁾ (*DP2 rule*).

- 5) 이상의 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봉제나 제조공정(most important assembly or manufacturing process)”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⁹⁷⁾ 이러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봉제나 제조(important assembly or manufacturing)”가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비특혜원산지 판정에 있어 한 국가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 제조, 또는 배양된 제품에 대해서는 ‘완

93) HS Code 번호 5609, 5807, 5811, 6209.20.50.40, 6213, 6214,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10, 6307.90, 6308, or 9404.90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94) 19 U.S.C.A. 3592, (b) (2) (A) (i).

95) 19 U.S.C.A. 3592, (b) (2) (A) (ii).

96) 19 U.S.C.A. 3592, (b) (2) (C). 이렇게 “cotton”, “wool” 또는 중량기준으로 “cotton”을 16 % 이상 포함하고 있는 “fiber blends”로 분류되는 품목은 결국 ‘fabric forward rule’의 적용을 받게 된다.

97) 19 U.S.C.A. 3592, (b) (3) (A).

98) 19 U.S.C.A. 3592, (b) (3) (B).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전 획득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재료를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을 채택하여 실질적 변형을 행한 국가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변형 기준은 무엇이 "실질적(substantial)"인가에 대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⁹⁹⁾ 결국은 "제품의 이름, 성질, 용도 변경 방식"(change in name/character/use method)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례별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섬유 및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제조공정 기준을 택하여,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방사(yarn), 직조(fabric), 봉제(assembly) 또는 일정한 수의 마무리공정(DP2)이 행해진 국가가 원산지국이 되게 된다.¹⁰⁰⁾ 이러한 미국의 법규에 비추어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의 한국 원산지 판정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완전 획득(wholly obtained)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산을 인정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을 한국

99) 그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seph A. LaNasa III, *Rules of Origin under the NAFTA: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to Objectively Transparent Protectionism*, 34 *Harvard Int'l L. J.* 384 (1993); David A. Gantz, *A post-Uruguay Round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e United States*, 12 *Ariz. J. Int'l & Comp. L.* 139-140 (1995) ("Customs officials and courts used many different criteria in making their determinations. The subjectivity and discretion afforded both the customs officials and the courts made the rules unpredictable, hard to administer consistently, and vulnerable to political pressure in their administration ... In the United States, the utility of the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has been hampered by its application on a case by case basis. Because a specific ruling may be required from the US Customs Service before manufacturers or importers know that the country where a major processing or manufacturing operation took place will be designated as the country of origin, the resulting, often lengthy delays substantially increase the costs of the affected transactions.")

100) 이러한 미국의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규정은 최근에 인도에 의해 WTO에 제소된 바가 있다. 인도는 WTO원산지에 관한협정 제2조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미국의 규정이 무역정책의 도구로 활용되어오고 차별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United States - Rules of Origin for Textiles and Apparel Products*, WT/DS243/R (20 June 2003). 따라서 미국의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규정의 국제법 합치성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 영토로 인정해 줄리도 만무하고, 우리측의 민족내부 거래 논리도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해보면, 당해 “제품의 형태, 형상, 본성 또는 특성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품에 상당한 정도의 가치가 부가된 곳”은 한국이어야 하고, 개성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단순한 가공 및 포장 등의 형식적인 작업만이 행해진 후 미국에 수출되어져야 비로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개성공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성공단에서 실질적인 생산 및 제조를 행해 생산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한국원산지 판정을 받기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 1) ‘yarns’제품의 경우 한국내에서 방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yarn forward rule’).
- 2) ‘fabric’의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직조가 이루어진 후(‘fabric forward rule’) 개성공단에서는 직조이후의 공정만이 행해져야 한다. 다만, ‘silk, cotton, man-made fiber, or vegetable fiber’로 분류된 ‘fabric’의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염색(dye) 및 날염(print)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공정 중 두개 이상이 행해져야 한국산이 인정되므로(DP2 rule), 개성공단에서 방사 및 직조를 행하고 이를 한국으로 들여와 염색·날염 및 마무리공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3) ‘yarn’ 및 ‘fabric’ 이외의 섬유제품 중 ‘badges, quilted textile products, diapers, handkerchiefs, shawls, scarves, mufflers, blankets, linen, curtains, sacks, tents, cloths’ 등의 품목은 방사 또는 직조가 한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yarn forward rule’ 또는 ‘fabric forward rule’), ‘knit’ 제품은 한국내에서 ‘knit’를 행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제품일지라도 세번 6117.10, 6213.00, 6214.00, 6302.22, 6302.29, 6302.52, 6302.53, 6302.59, 6302.92, 6302.93, 6302.99, 6303.92, 6303.99, 6304.19, 6304.93, 6304.99, 9404.90.85, or 9404.90.95에 해당하며 ‘cotton’ 이나 ‘wool’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개성공단내에서 방사 및 직조를 행하고 한국으로 들여와 염색·날염 및 마무리공정을 행해도 된다.(‘DP2 rule’). ‘yarn’ 및 ‘fabric’ 이외의 섬유제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한국내에서 전적으로 봉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ngle country assembly rule’).

나. 특혜원산지규정

미국의 특혜원산지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으며, 이들 각각 하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미국의 ‘Insular Possession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미국의 영역 밖에 있는 속령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이들 속령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imported directed)” 제품이 70% 이하(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의 section 213(b)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50% 이하)의 외국산 재료(foreign material)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관세수입의 혜택이 부여된다.¹⁰¹⁾

② ATPA(Andean Trade Preference Act) 원산지 규정

Bolivia, Ecuador, Columbia, Peru 등 Andean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이다. 이들 국가들로부터 곧바로 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direct-shipment rule’),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 중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¹⁰¹⁾ General Note 3 (iv)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직접생산비용이 최종제품 가치의 3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local materials and/or direct processing cost-added of 35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¹⁰²⁾ 위 직접생산비용 산정 목적을 위해서는 Puerto Rico와 US Virgin Islands도 산정대상국가에 포함된다. 이때,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이 최종제품 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은 최종제품 가치의 15%까지 산정되어질 수 있다('limited U.S.-country benefit').¹⁰³⁾

단, 단순한 결합(combining)이나 포장(packaging), 또는 제품의 성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않는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이 행해진 것만 가지고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민감품목¹⁰⁴⁾의 경우에는 위 혜택이 배제된다.

102) General Note 11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9 U.S.C.A. 3201.

103) Id.

104) "(i) textile and apparel articles which were not eligible articles for purposes of this note on January 1, 1994;

(ii) footwear not designated as of August 6, 2002, as eligible for purposes of the 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under title V of the Trade Act of 1974;

(iii) tuna, prepared or preserved in any manner, in airtight containers, other than tuna in foil or other flexible airtight containers weighing with their contents not more than 6.8 kg each;

(iv) petroleum, or any product derived from petroleum, provided for in headings 2709 and 2710 of the HTS;

(v) watches and watch parts (including cases, bracelets and straps), of whatever typ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chanical, quartz digital or quartz analog, if such watches or watch parts contain any material which is the product of any country with respect to which the HTS column 2 rates of duty apply;

(vi) handbags, luggage, flat goods, work gloves and leather wearing apparel that were not designated on August 5, 1983, as eligible articles for purposes of the 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under title V of the Trade Act of 1974;

(vii) sugars, syrups, and molasses provided for in subheadings 1701.11.50, 1701.12.50, 1701.99.50, 1702.90.20 and 2106.90.46 of the HTS;

(viii) rum and tafia provided for in subheading 2208.40 of the HTS; or

(ix) any agricultural product of chapters 2 through 52, inclusive, that is subject to a tariff-rate quota, if entered in a quantity in excess of the in-quota quantity for such product." General Note 11 (d)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이들 Andean 국가들에 반입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비민감품목의 경우), 이들 국가들에서의 가공은 결합, 포장, 희석 등의 단순공정 이상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의 합계가 최종제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상일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Compact of Free Association Act 원산지 규정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Republic of Palau 등 미국의 Freely Associated States (FAS)들에게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다. 이들 국가들로부터 곧바로 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direct-shipment rule'),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 중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이 최종제품 가치의 3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local materials and/or direct processing cost-added of 35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이 최종제품 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은 최종제품 가치의 15%까지 산정되어질 수 있다('limited U.S.-country benefit'). 일정한 민감품목¹⁰⁵⁾의

105) "(i) tunas and skipjack, prepared or preserved, not in oil, in airtight containers weighing with their contents not over 7 kilograms each, in excess of the quantity afforded duty-free entry under subdivision (c) of this note;

(ii) textile and apparel articles which are subject to textile agreements;

(iii) footwear, handbags, luggage, flat goods, work gloves and leather wearing apparel, the foregoing which were not eligible articl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on April 1, 1984;

(iv) watches, clocks and timing apparatus of chapter 91 (except such articles incorporating an optoelectronic display and no other type of display);

(v) buttons of subheading 9606.21.40 or 9606.29.20; and

(vi) any agricultural product of chapters 2 through 52, inclusive, that is subject to a tariff-rate quota, if entered in a quantity in excess of the in-quota quantity for such product. General Note 10 (d)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경우에는 위 혜택이 배제되며, 관세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수입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¹⁰⁶⁾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이들 FAS국가들에 반입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위 (2)항에서 분석한 내용이 그대로 이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게 된다. 단, 민감품목의 목록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④ APTA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원산지 규정

APTA는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동차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APTA는 “캐나다제품(Canadian articles)”으로 인정된 “자동차(motor vehicle)” 및 일정한 “자동차부품(original motor-vehicle equipment)”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Canadian articles”란 캐나다 또는 미국 이외에서 생산되었으며 NAFTA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캐나다산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무관세로 수입된 자동차부품이 “미국내에서 자동차생산에 사용(used in the manufacture in the United States of motor vehicles)”되지 않는 경우, 몰수되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관세가 부과된다.¹⁰⁷⁾

위와 같이 APTA상의 혜택은 캐나다나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로만 생산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부여되므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자동차 관련 재료를 캐다가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⑤ CBERA(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상의 원산지 규정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Costa Ric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Nicaragua, Panama, St.

106) General Note 10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07) General Note 5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9 C.F.R. 10.84, 19 U.S.C.A. 2001.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 British Virgin Islands 등 CBERA국가들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곧바로 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direct-shipment rule'),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 중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이 최종제품 가치의 3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local materials and/or direct processing cost-added of 35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위 직접생산비용 산정 목적을 위해서는 Puerto Rico와 United States Virgin Islands도 산정대상국가에 포함된다. 이때,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이 최종제품 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은 최종제품 가치의 15%까지 산정되어질 수 있다('limited U.S.-country benefit'). 단, 단순한 결합(combining)이나 포장(packaging), 또는 제품의 성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않는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이 행해진 것만 가지고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일정한 민감품목¹⁰⁸⁾의 경우에는 위 혜택이 배제된다.¹⁰⁹⁾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재료가 이들 CBERA국가들에 반입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비민감품목의 경우), 이들 국가들에서의 가공은 결합, 포장, 희석 등의 단순공정 이상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의 합계가 최종제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상일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는 민감품목의 종류가 Andean국가 및 FAS국가의 경우와 다소 상이함을 주의해야 한다.

108) 일정한 조건하에서 "articles of beef or veal, sugars, sirups and molasses, textile and apparel articles, watches and watch parts, Handbags, luggage, flat goods, work gloves, and leather wearing apparel, the agricultural product" 등.

109) General Note 7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9 C.F.R. 10.191.

⑥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상의 원산지 규정

Republic of Angola, Republic of Benin, Republic of Botswana, Burkina Faso, Republic of Cape Verde, Republic of Cameroon, Republic of Chad,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Republic of Congo, Republic of Djibouti, Ethiopia, Gabonese Republic, Republic of The Gambia, Republic of Ghana, Republic of Guinea, Republic of Guinea-Bissau, Republic of Kenya, Kingdom of Lesotho, Republic of Madagascar, Republic of Malawi, Republic of Mali,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Republic of Mauritius, Republic of Mozambique, Republic of Namibia, Republic of Niger, Federal Republic of Nigeria, Republic of Rwanda, Democratic Republic of Sao Tome and Principe, Republic of Senegal, Republic of Seychelles, Republic of Sierra Leone, Republic of South Africa, Kingdom of Swazil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Republic of Uganda, Republic of Zambia 등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혜관세를 수혜 받으려면, 이들 국가로부터 곧바로 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direct-shipment rule'),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 중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이 최종제품 가치의 3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local materials and/or direct processing cost-added of 35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이 최종제품 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은 최종제품 가치의 15%까지 산정되어질 수 있다('limited U.S.-country benefit').

단, 단순한 결합(combining)이나 포장(packaging), 또는 제품의 성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않는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이 행해진 것만 가지고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는 2015년 9월 30일까지 부여된다.¹¹⁰⁾

110) General Note 16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 반입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들 지역에서 가공은 결합, 포장, 희석 등의 단순공정 이상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의 합계가 최종제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상일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혜택이 배제되는 민감품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 한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⑦ ‘US-Israel FTA Implementation Act of 1985’ 원산지 규정

Israel, West Bank, Gaza Strip으로부터 곧바로 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direct-shipment rule’), 일반적으로 이들 지역들 중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이 최종제품 가치의 3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local materials and/or direct processing cost-added of 35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이 최종제품 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미국내에서 생산된 가치나 비용은 최종제품 가치의 15%까지 산정되어질 수 있다(‘limited U.S.-country benefit’). 단, 단순한 결합(combining)이나 포장(packaging), 또는 제품의 성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이 행해진 것만 가지고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는다.¹¹¹⁾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Israel, West Bank, 또는 Gaza Strip에 반입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들 지역에서 가공은 결합, 포장, 희석 등의 단순공정 이상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의 합계가 최종제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상일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1) General Note 8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⑧ NAFTA Implementation Act 원산지 규정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NAFTA지역에서 완전히 획득된(wholly obtained)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다. 또한 비원산지 재료가 NAFTA 역내에서 일정한 세 번 변경(tariff shift) 및 지역가치 포함(regional value content)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 또한 HS chapter 28 - 38 제품을 비롯한 신발류, 기차(train) 관련 제품 등의 제품 등 많은 품목들에 있어서 60%(거래가 방식) 또는 50%(순비용방식) 이상의 지역가치 포함(regional value content) 비율 충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번변경 및 지역가치 포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제품의 거래가의 7%이하를 구성하는 비원산지재료는 요구되는 세번변경 및 지역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de minimis' 예외). 단, 섬유 및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weight)”의 7%기준이 'de minimis' 예외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de minimis 예외'는 단지 소량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는 NAFTA 역내 기업들에게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지 않기 위함이다. 아울러 칼라 TV, 세탁기류 등에 있어서는 “핵심부품(key component or material)”이 역내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제품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 비록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 재료를 생산하였고 이 재료가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이라도 “수출국내에서 최초로 비원산지 재료를 수령한 시점(at the time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received by the first person in the territory of Canada, Mexico or the United States who takes title to them)”에서의 원래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추적하여 지역가치 포함 요건을 계산하게 된다. ('tracking of the actual value'). 일정한 자동차 제품의 지역가치 포함 요건은 품목에 따라 62.5%(순비용방식) 또는 60%(순비용방식)이 적용된다.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섬유제품의 경우에도 특칙을 두어 세 번 변경 기준 또는 이와 아울러 ‘yarn forward rule’, ‘fabric forward rule’ 및 ‘재단과 봉제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제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희석, 또는 원산지 규정을 우회(circumvent)할 목적으로 행해진 생산공정으로 인한 제품의 변경은 그 자체로서는 원산지 지위획득을 부여하지 않는다. (non-qualifying operations).

아울러 NAFTA 원산지 규정은 ‘accumulation’ 인정,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및 ‘fungible goods and materials’에 대한 규정,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규정, ‘indirect materials’ 규정 등을 두고 있다.¹¹²⁾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멕시코나 캐나다에 수출되어 가공을 거친 후 미국에 수출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NA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번 변경을 거쳐야 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50% 또는 60%라는 고율의 지역가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자동차 또는 섬유제품의 재료의 경우에는 NAFTA상의 특별규정하의 가중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7% ‘de minimis’ 예외에 주목하여 동 예외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⑨ CBTPA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of 2000) 원산지 규정

Barbados, Belize,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Nicaragua, Panama, Saint Lucia, Trinidad and Tobago 등 CBTPA국가들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조건은 이들 국가에서 “완전히 획득된(wholly obtained)” 제품이거나 NAFTA원산지 규정상의 조건을 유추 적용할 때 이를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단, 단순한 결합(combining)이나 포장(packaging), 또는 제품의 성상을 실질

112) General Note 12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2 C.F.R. 181.131; 19 U.S.C.A. 3332.

적으로 변경하기 않는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이 행해진 것만 가지고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혜대우는 2008년 9월 30일을 최대존속 가능기한으로 하여 FTAA가 발효되는 시점까지 존속하게 된다.¹¹³⁾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CBTPA국가들에 의해 가공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위 NAFTA 원산지 규정에서 분석한 바가 이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

⑩ US - Jordan FTA Implementation Act 원산지 규정

2000년 10월 24일 발효된 미국-요르단간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다. 요르단으로부터 “곧바로 미국으로 수입되는(imported directly)”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된다. 이때, “곧바로 수입되었다(imported directly)”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은 흥미롭다. 즉, (1) “제3국 영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2) 이를 거치더라도 제3국 세관의 통제하에서 시장(commerce) 내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만이 취해진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요르단에서 완전히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요르단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wholly obtained) 제품”이거나 요르단 내에서 생산된 “새로운 제품 또는 상이한 교역품”(new or different articles of commerce)이어야 한다. 요르단 내에서 생산된 새로운 제품 또는 상이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요르단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이 최종제품 가치의 35%이상을 차지해야 하며(‘local materials and/or direct processing cost-added of 35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이러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이 최종제품 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미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나 비용은 최종제품 가치의 15%까지 산정되어질 수 있다(‘limited U.S.-country benefit’).

¹¹³⁾ General Note 17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단, 단순한 결합(combining)이나 포장(packaging), 또는 제품의 성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이 행해진 것만 가지고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섬유 및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yarn forward rule’, ‘fabric forward rule’, ‘single country assembly rule’, ‘DP2 rule’ 등 미국법상의 섬유제품에 대한 비특혜원산지규정과 유사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¹¹⁴⁾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요르단에 반입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들 지역에서의 가공은 단순공정 이상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치 및 직접생산비용의 합계가 최종제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상일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특별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므로,¹¹⁵⁾ 품목에 따라 방사나 방직 자체를 Jordan내에서 수행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① US-Singapore FTA Implementation Act 원산지 규정

US-Singapore FTA에 의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다.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해 싱가포르 원산지가 인정된다.

첫째,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완전히 획득된(wholly obtained) 제품¹¹⁶⁾

둘째, 일부 IT품목¹¹⁷⁾에 대해서는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SI)’를 적용하여 구체적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따지지 않고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품목의 목록은 부록3과 같다.

셋째,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세번변경 기준, 국산품포함(domestic content) 기준, 지역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¹¹⁸⁾ 특정

114) General Note 18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Public Law 107-43, 115 Stat. 243.

115) 이점이 ATPA, FAT, CBERA 국가들의 경우에는 섬유제품이 대개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특혜관세를 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점과 다른 점이다.

116) 각 제품 유형별로 “wholly obtained goods”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General Note 25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17) General Note 25 (m)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18) 주로 전기제품에 대해 35 - 60%의 부가가치 기준 적용

공정 기준¹¹⁹⁾ 등이 혼합되어 요구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 아울러 ‘de minimis 기준 적용’, ‘accumulation’ 인정,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및 ‘fungible goods and materials’에 대한 규정,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규정, ‘indirect materials’ 규정 등을 두고 있다.¹²⁰⁾

개성공단 제품을 싱가포르가 수입하여 가공을 거친 후 미국으로 생산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최근에 체결된 한국-싱가포르 FTA에서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제품을 일정한 조건하에 한국산으로 인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미국과 싱가포르간에는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결국 미-싱FTA상의 특혜관세의 혜택이 개성공단 생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싱가포르산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시 된다.

우선 싱가포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재료를 수입한 후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싱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인 세번변경, 지역가치 포함, 국산품 포함 기준 등의 제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특혜관세 혜택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소량만 사용된 경우 ‘de minimis’예외를 주장하여 특혜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수입한 후 그대로 (또는 단순공정만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때, 동 수출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북한인지가 문제시 된다.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 미국의 MFN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나, 북한산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이보다 많게는 수십배 가중된 Column 2의 관세율을 부과 받게 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 문제에 관해

119) 화학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공정을 지정,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yarn forward rule’, ‘fabric forward rule’, ‘assembly rule’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

120) General Note 25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Pub.L.108-78; 117 Stat. 948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서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간의 FTA상의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 조항은 한국과 싱가포르간에만 유효한 양자조약상의 규정이고, 더구나 그 내용상 “제3국에 대해 의무를 창출할 것을 의도(intend)”하고 규정한 조항이 아니므로,¹²¹⁾ 싱가포르가 미국에 대해 동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주장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품은 미국에 의해 북한산으로 판정되어 Column 2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것은 위 미-싱FTA상의 두 번째 원산지 규정인 ISI 적용 품목에 대한 규정이다. 부록3에서 나열한 134종의 ISI 적용품목은 구체적인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보지 않고 그 “수입시의 제품의 상태(in their condition as imported)”가 위 134 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제품이 “싱가포르의 영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지(good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Singapore)”만을 기준으로 특혜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¹²²⁾ 따라서, 싱가포르가 미국에 재수출하고 있는 상품이 위 134개 품목에 해당하기만 하면 미-싱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우회(circumvention)수출 문제가 제기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싱가포르간의 정치·외교적인 함수관계에 의해 좌우될 문제이기는 하나, 적어도 협정 문안상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이 도출되는 것이다.

121) 제3국에 대한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의 조항의 경우에도 제3국의 “명시적인 (expressly) “서면동의” (accepts in writing)를 얻지 않으면 제3국을 구속하지 못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5조.

122)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s of this no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s (c), (d), (n) and (o) thereof, good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re eligible for treatment as originating goods of a SFTA country under the terms of this note only if they - ... (ii) are goods that, **in their condition as imported**, are enumerated in subdivision (m) of this note and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Singapore**...” General Note 25 (b)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한가지 첨언할 것은 위 134 개 품목 중 대북한 교역통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북한 통제에 관한 조약·미국내법 상의 통제 대상 품목(북한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과 상기 미-싱FTA·미국내법 상의 원산지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때로는 미국에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상기를 감안할 때,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싱가포르 내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가공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 ISI 적용 품목을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과 싱가포르간의 교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⑫ US-Chile FTA Implementation Act 원산지 규정

US-Chile FTA에 의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다. 칠레나 미국에서 “완전히 획득된”(wholly obtained) 제품, 또는 “칠레나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Chile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 제품으로 개별 품목별로 규정된 세번변경 기준·역내가치 기준·섬유제품에 대한 특정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제품의 지위가 인정된다.¹²³⁾

123) General Note 26 (b)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For the purposes of this no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s (c), (d), (m) and (n) thereof, good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re eligible for treatment as originating goods of a UCFTA country under the terms of this note only if they-

(i) we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Chile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

(ii) were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Chile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 and--

(A) each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subdivision (n) of this note; or

(B) the good otherwise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or other requirements set forth in such subdivision (n); an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note and of applicable regulations; or

(iii)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Chile or of the United States, or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위에서 주목할 점은 세 번 변경기준이나 역내가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제품의 “**생산과정이 전적으로(produced entirely)**” 칠레나 미국에서 발생하여야 원산지지위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¹²⁴⁾ 이는 다른 특혜원산지 규정과 달리 한층 강화된 조건을 부가한 것이며, 그 목적은 칠레가 주변국가로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가공(outward processing)한 후 다시 칠레로 들여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인하기 위함이라 보여진다. 즉, 이는 중남미 국가들이 FTAA 등 미국과의 FTA에 참여하지 않고 미-칠레FTA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아울러 미-칠레FTA는 ‘de minimis’ 기준 적용, ‘accumulation’ 인정,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및 ‘fungible goods and materials’에 대한 규정,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규정, ‘indirect materials’ 규정 등을 두고 있다.¹²⁵⁾

개성공단 제품이 칠레로 수출되는 경우, 칠레가 이 제품을 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게 될 때, 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세 번 변경 및 지역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고 일체의 제조 공정이 칠레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⑬ US-Australia FTA Implementation Act 상의 원산지 규정

미-호주간의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다. 호주로부터 “**곧바로 미국으로 수입된**”(imported directly)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며, 호주나 미국에서 “**완전히 획득된**”(wholly obtained) 제품, 또는 “**호주나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produced entirely

both, exclusively from materials described in subdivisions (i) or (ii), above.”

124) Id. (ii) 참조.

125) General Note 26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Pub.L.108-78; 117 Stat. 948

in the territory of Australia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 제품으로”¹²⁶⁾ 개별 품목별로 규정된 세 번 변경 기준·역내가치 기준·섬유제품에 대한 특정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제품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에서 주목할 점은 미-칠레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제품의 **생산과정이 전적으로** 칠레나 미국에서 발생하여야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며, 이는 호주의 ‘outward processing’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²⁷⁾ 단, 미-칠레FTA와 달리 미-호주 FTA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곧바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미-호주FTA는 자동차제품에 대한 역내가치 계산의 특칙¹²⁸⁾을 두고 있으며, ‘de minimis’ 기준 적용, ‘accumulation’ 인정,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및 ‘fungible goods and materials’에 대한 규정,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규정, ‘indirect materials’ 규정 등을 두고 있다.¹²⁹⁾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이 호주로 수출되는 경우, 호주가 이 제품을 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게 될 때, 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세 번 변경 및 지역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고, 일체의 제조 공정이 호주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제3국의 시장으로 진입(제3국의 세관의 감독하에 경유 통관된 경우는 시장으로의 진입이 아님)함이 없이 미국으로 수출된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126) General Note 28 (b) (ii)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27) 미국은 뉴질랜드와 FTA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뉴질랜드가 미-호주FTA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outward processing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128) General Note 28 (g) (iii)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29) Pub.L. 108-286; 118 Stat. 919.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⑭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 부여를 위한 원산지 규정

미국은 관세양허표상의 “지정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상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지정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상품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품이 지정개도국으로부터 미국내로 곧바로(directly) 수입될 것. 아울러 당해 개도국(또는 지적 개도국지역 연합)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이나 가치에 당해 개도국내에서 행해진 제조공정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제품의 수입시의 제품 평가가치의 35% 이상일 것. 단, 단순한 결합(combining)이나 포장(packaging), 또는 제품의 성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이 행해진 것만 가지고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는다.”¹³⁰⁾

130) “Whenever an eligible article which is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a designat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listed in subdivision (a) of this note i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directly from such country or territory, such article shall be eligible for duty-free treatment as set forth in the “Special” subcolumn, unless excluded from such treatment by subdivision (d) of this note; provided tha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um of (1) the cost or value of the materials produced in the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or any 2 or more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same association of countries which is treated as one country under section 507(2) of the Trade Act of 1974, plus (2) the direct costs of processing operations performed in such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or such member countries is not less than 35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of such article at the time of its entry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No article or material of a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shall be eligible for such treatment by virtue of having merely undergone simple combining or packing operations, or mere dilution with water or mere dilution with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 19 U.S.C.A. 2463 (a) (2); General Note 4 (c) (developing countries) & 4 (b) (ii)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또한 아래의 제품들은 GSP특혜관세 혜택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섬유협정의 대상인 섬유 및 의류제품, 시계류, 민감품목인 전자제품, 민감품목인 철강제품, 신발, 핸드백, 가방, 장갑, 가죽의류, 민감품목인 유리제품, 관세할당을 이상으로 수입되는 농산물, 기타 대통령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품목”¹³¹⁾

북한은 미국이 지정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명단에 속해있지 않고 오히려 쿠바 및 라오스와 함께 Column 2의 제재대상 국가에 속해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을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 북한산으로 인정되어 Column 2의 높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 재료가 개도국인 제3국에 수출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때, GSP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1) 이러한 제3국에서 곧바로 (즉, 개도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에 수출될 것, 2) 동 제3국에서 단순한 결합, 포장, 희석 이외의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재료의 가치와 직접생산비용이 최종제품 가치의 35%이상을 차지할 것, 그리고 3) 이러한 최종제품이 섬유 및 의류제품, 시계류, 민감품목인 전자제품, 민감품목인 철강제품, 신발, 핸드백, 가방, 장갑, 가죽의류,

131) “(i) textile and apparel articles which are subject to textile agreements;
 (ii) watches, except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pursuant to section 503(c)(1)(B)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iii) import-sensitive electronic articles;
 (iv) import-sensitive steel articles;
 (v) footwear, handbags, luggage, flat goods, work gloves and leather wearing apparel, the foregoing which were not eligible articles for purposes of the GSP on April 1, 1984;
 (vi) import-sensitive semimanufactured and manufactured glass products;
 (vii) any agricultural product of chapters 2 through 52, inclusive, that is subject to a tariff-rate quota, if entered in a quantity in excess of the in-quota quantity for such product; and
 (viii) any other articles which the President determines to be import-sensitive in the context of the GSP.” 19 U.S.C.A. 2463 (b); General Note 4 (c)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민감품목인 유리제품, 관세할당을 이상으로 수입되는 농산물 등이 아닐 것이다.¹³²⁾

⑮ 한-미FTA상의 원산지규정

한국이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형태로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그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한-미FTA상의 역외가공 예외조항이 아직 선언적 조항(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설치)에 그치고 있으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재료를 생산한 후 이를 한국내로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역외가공”이 아니라 재료의 수입 문제이므로 한-미FTA상의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한-미FTA상의 원산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는 제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 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i) 세 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ii) 세 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alternative rule) 및 (iii) 세 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hybrid rule)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원칙들로 (i) 대체 가능상품 및 재료 원칙, (ii) 상품의 세트 원칙, (iii)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원칙, (iv) 간접재료 원칙 등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132) 이 밖에도 미국의 특혜원산지규정은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상의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General note 6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9 C.F.R. 10.183), ‘American Goods Returned’에 관한 규정(Subchapters I and II to Chapter 98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19 C.F.R. 10.1)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주제와 연관성이 적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첫째, 수입원료의 세 번과 제품의 세 번이 일정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인 세 번 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을 살펴보면, 세번변경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HS 2단위(류변동: CC), 4단위(호변동: CTH)) 또는 6단위(소호변동: CTSH)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FTA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이 품목별로 사용되고 있다. 류변동 기준(2단위 세 번 변경기준)은 HS코드상의 제1-5류(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6-14류(식물성 생산품), 제15류(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해생산물), 제16-24류(조제식료품, 음료, 알콜, 식초, 담배, 담배대용물), 제49류(인쇄물), 제50류 가운데 HS5001-5003 물품(누에고치, 생사 및 그 부산물), 제51류 가운데 HS5101-5105 물품(양모, 섬수모, 조수모, 섬수모 및 그 부산물), 제52류 가운데 HS5201, 5207 물품(면, 면사), 제53류 가운데 HS5301-5305 물품(아마, 대마 등), 제54류(인조 필라멘트), 제56-58류(특수직물), 제69류(도자제품), 제82류(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술가락과 포크 및 그 부속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된다.¹³³⁾

호변동(4단위 세 번 변경) 기준은 제25류(소금, 황, 토석 및 석고·석회, 시멘트), 제28류(무기화학품, 귀금속, 회토류금속, 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무기화합물), 제35류(단백질 물질, 변성전분, 효소 및 풀), 제36류(화약·화공·성냥·발화성 합금 및 가연성 조제품), 제37류(사진·영화용 재료),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고무와 고무제품), 제9부 제44-46류(목재와 목재제품, 목탄, 코르크, 조물재료 제품, 농 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제47류(목재 펄프, 섬유질 셀룰로오스 펄프, 판지), 제48류(신발, 각반 및 그 유사품과 부분품), 제67류(우모,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제품), 제74류(동과 동제품), 제75류(니켈과 니켈제품), 제76류(알루미늄과 알루미늄제품), 제78류(연과 연제품), 제80호(주석과

133) 한-미FTA 부속서 6-가 참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주석제품), 제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제86류(철도 또는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부분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된다.¹³⁴⁾

소호변동(6단위 세 번 변경) 기준은 HS2711(석유가스, 탄화수소), HS3001.10-002.90 (의료용품), HS3510.10-3501.90 (단백질계 물질), HS4101.20-4103.10 (원피 제품), 제84류(원자로·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등의 일부 품목에 적용된다.¹³⁵⁾

이러한 세 번 변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품과 함께 인도된 표준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본 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상품의 원산지를 따른다.¹³⁶⁾ 소매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예 : 포장지, 병, 캔 등)는 HS품목분류체계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따른다.¹³⁷⁾

둘째,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이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한·미FTA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제법(Method Based on Non-Value of Origination Materials: Build-down Method)¹³⁸⁾과 집적법(Method Based on Value of Origination Materials: Build-up Method)¹³⁹⁾을 인정하고 있다.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위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¹⁴⁰⁾ 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 요건이 한-미FTA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공제법, 집적법 및 순

134) Ibid.

135) Ibid.

136) 한-미FTA 제6.8조.

137) 한-미FTA 제6.10조.

138) 공제법(Build Down):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139) 집적법(Build Up):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140) 한-미FTA 제6.2조.

원가법(Net Cost Method for Automotive Goods)¹⁴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여지를 넓히고 있다.¹⁴²⁾

공제법은 조정가치(Adjusted Value)에서 비원산지재료가치(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를 뺀 금액을 조정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며,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이상이어야 한다. 즉, 공제법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역외산 재료가치의 비율이 55% 미만인 경우에 당사국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집적법은 원산지재료가치(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를 조정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며, 30% 이상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대개 요구된다.¹⁴³⁾ 이는 역외산 재료가치의 비율이 70%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순원가법은 상품의 총비용(total cost)에서 관측·마케팅·판매 후 서비스 비용·로얄티, 운송·포장비용 및 비허용 이자비용¹⁴⁴⁾을 삭감한 금액인 순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공제법에 포함되는 이러한 비용들과 이윤이 제외되므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게 된다.

셋째,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이란 제조공정 중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

141) 순원가법(Net Cost):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순원가}(NC)} \times 100$$

142) 한-미FTA 제6.2조 제3항.

143)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을 집적법 35%, 공제법 45%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순원가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은 집적법 35%, 공제법 55%, 순원가법 3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집적법 40%, 공제법 50%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HS 8482.10-8482.80, HS 8483.40-8483.50, HS8582.12, HS8528.21, HS8428.30, HS8709.11-8709.19, HS8709.90, HS8714.11-8714.96)도 있고, 집적법 30%, 공제법 40% 이상을 요구하는 품목(HS85.34, HS8541.10-8542.90, HS8607.19, HS9101.11, HS9101.19, HS9101.21, HS9101.29, HS91.02-91.07, HS9112.20)도 있다. 한-미FTA 부속서 6-가 참조.

144) 비허용 이자비용이라함은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한미FTA 제6.22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다. 한-미FTA는 주로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화학반응, 혼합, 정제, 입자크기 변화, 표준물질, 이성체분리, 분리금지 등의 공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을 규정하고 있다.¹⁴⁵⁾

한-미FTA는 최소허용수준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을 인정하고 있어, 세 번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역외산 재료 전부에 대해 세 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일정한 재료의 가격이 전체 물품가격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재료의 세 번 변경여부에 의해 전체 원산지 판정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재료에 대해서는 세 번 변경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한-미FTA는 일정한 농수산물¹⁴⁶⁾ 및 섬유류 상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당해 상품의 조정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⁴⁷⁾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해서는 중량기준(총 중량의 7% 이하)에 의하여 미소기준을 설정하고 있다.¹⁴⁸⁾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게 되면, 이상과 같은 원산지 규정이 한-미간에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상의 이러한 원산지 원칙과 조건들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제품에서의 재료생산산·수입가공 및 대미 수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45) 한-미FTA 부속서 6-가 제6부 규칙1-7.

146) 어류(HS제3류), 낙농제품(HS제4류), 채소류(HS제7류), 쌀제품(HS1006, HS 제11류), 감귤류(HS0805), 주스류(HS2009.11-39), 복숭아·배 및 살구류(HS제8류, 제29류), 동식물성 유지(HS제15류), 설탕(HS제17류). 한-미FTA 부속서 6-나.

147) 한-미FTA 제6.6조 제1항.

148) 단,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한다. 한-미FTA 제4.2조 제7항.

2. 중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Regulations of the Origin of Imported-Exported Goods of PRC(“원산지조례”)¹⁴⁹⁾
- 2) Proclamatio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PRC¹⁵⁰⁾
- 3) Provisional Rules of Origin for Imports under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¹⁵¹⁾

이중 1), 2)가 비특혜원산지규정이고, 3)이 특혜원산지규정이다.

가. 비특혜원산지 규정

중국의 ‘원산지조례’는 “MFN관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원산지표시, 관세율할당,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목적상” 필요한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¹⁵²⁾

우선 단일국가 원산지 규정에 대해 동 규칙은 ‘완전 획득 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을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고 있다. 즉, “자국의 영역내에서 양육된 동물, 동물로부터 획득된 미가공품, 재배된 식물, 채굴된 광물, 기타 획득된 천연제품, 원재료를 획득하기 위해 수집된 부산물” 등은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영해이원에서 어

149)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동 조례는 2004년 8월 18일 국무원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동 조례 이전에 ‘Provis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Rules of Origi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PRC’(December 6, 1986) 및 ‘Rules of Origin of Exported Goods of PRC’(March 8, 1992)가 존재했으나, 상기 조례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게 되었다.

150) 2001년 12월 5일 부로 시행되었다.

151) Order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94 (January 1, 2002).

152) 원산지조례 제2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획하거나 어획물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의 경우 이를 어획한 합법적인 기국이 원산지국이 된다. 그리고 “영해 이원의 해상이나 지하에서 채굴한 제품”은 채굴권이 있는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 아울러 “이상의 제품들로부터 생산한 제품”도 그 국가의 원산지제품이 된다.¹⁵³⁾ 이때, 운송 및 보관, 적재 및 하역, 포장 등의 판매를 위한 조치 등의 단순공정은 완전 획득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¹⁵⁴⁾ 따라서, A국에서 완전히 채굴된 광물을 B국에서 단순 포장하였을지라도 A국이 원산지국이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153) 원산지조례 제4조.

“Article 4 The goods obtained in only one country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se Regulations mean:

1. Th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e country (region);
2. The animals captured, fished and collected in the field of the country (region);
3. Unprocessed goods of live animals obtained in the country (region);
4. Plants and the products of plants harvested in the country (region);
5. The minerals excavated in the country (region);
6. Other natural goods obtained in the country (region) except for the goods mentioned in item 1 to 5 of this Article;
7. The waste and scrap materials produced by production that have to be thrown aside or collected as materials in the country (region);
8. The goods collected in the country (region) that cannot be restored or repaired, or the parts or materials recycled from the goods;
9. Aquatic animals and other goods obtained by the ships with the flag of the country legally in the sea area outside its territorial waters;
10. The products obtained from processing the goods listed in item 9 of this Article in the processing ship which flies a flag of the country legally;
11. The goods obtained from the seabed or subsoil of seabed outside the territory sea where the country has special rights of excavation;
12. The products produced from the goods listed in item 1 to 11 of this Article in the country (region).”

154) 원산지조례 제5조.

“When the goods are determined whether they are obtained in only one country (region), following little processing or treatment is not considered: 1.Processing or treatment for transportation or storage;

2. Processing or treatment for being convenient for loading and unloading;
3. Processing or treatment for selling goods, such as packing and etc.”

다음으로 복수국가가 관련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조례는 “실질적 변경(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채택하여, 제품의 “실질적 변경이 최종적으로 발생한(final substantive changes)” 국가가 원산지국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¹⁵⁵⁾ 이러한 실질적 변경 기준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동 조례는 ‘세번변경(tariff shift)기준’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¹⁵⁶⁾ 그러나 완성된 제품의 세번이 실질적인 세 번 변경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이 사용된다.¹⁵⁷⁾ 이러한 기준들의 구체적인 요건의 정도에 관해서는 이후에 관계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다.¹⁵⁸⁾

과거의 잠정조례¹⁵⁹⁾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었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 “4단위 heading의 변경” 및 “30% 부가가치”를 명시하고 있었다.¹⁶⁰⁾ 그런데 이제 특정공정기준이 추가적으로 도입되고 부가가치 기준도 세 번 변경 기준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반 기준들의 구체적인 요건(threshold)은 조례자체에서 지정하지 않고 관계당국에 위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원산지 기준을 다양화하고 단일기준이 아닌 품목별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우회행위(circumvention)에 대해 대처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⁶¹⁾ 실제로 중국의 원산지조례는 반우회조향을 두고 있는

155) 원산지조례 제3조. “两个以上国家(地区)参与生产的货物, 以最后完成实质性改变的国家(地区)为原产地”.

156) 원산지조례 제6조.

157) Id. “税则归类改变不能反映实质性改变的, 以从价百分比、制造或者加工工序等为补充标准”.

158) 원산지조례 제6조.

159) ‘Provis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Rules of Origi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PRC’(December 6, 1986).

160) Id.

161) 원래 석유제품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구입한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는 특칙이 존재하였으나, 이 조항은 1993년말에 삭제되었다. ‘Proclamation Concerning Change of the Rules of Origin for Petroleum Products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바, “반덤핑, 상계조치나 세이프가드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중국세관은 이러한 가공을 원산지 판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¹⁶²⁾

이밖에도 중국의 원산지조례는 “indirect material”,¹⁶³⁾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¹⁶⁴⁾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and guidebooks”¹⁶⁵⁾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산지 판정 절차규정, 당국의 사전 원산지 판정(pre-determination of origin)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한 중재절차,¹⁶⁶⁾ 허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제 위의 중국의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비추어 개성공단 생산제품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산 제품의 수입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성공단 제품의 주요 수출지는 실제로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중국의 원산지 규정이 세 번 변경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요건은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잠정조례의 예를 볼 때 대체로 4단위 세 번 변경기준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적 엄격한 세 번 변경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¹⁶⁷⁾ 그러나, 세 번 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 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과거의 잠정조례의 예에 따라 비교적 낮은 기준인 30% 부가가치기준이 대체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비교적 관대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라 볼 수 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3년 10월 21일).

162) Id. 제10조. “第十条对货物所进行的任何加工或者处理, 是为了规避中华人民共和国关于反倾销、反补贴和保障措施等有关规定的, 海关在确定该货物的原产地时可以不考虑这类加工和处理”。

163) 원산지조례 제7조.

164) Id. 제8조.

165) Id. 제9조.

166) 이러한 사전판정절차 및 불복절차는 ‘Proclamatio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PRC’(December 5, 2001)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167) 우리나라는 6단위 세 번 변경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에서의 제조활동이 비록 한국산 재료에 대한 일정한 세 번 변경을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대략 30%이상의 부가가치만 창출하게 되면 북한산으로 판정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섬유제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대부분의 대중국 수출품의 원산지는 북한산으로 판정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성공단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가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 등의 원산지규정이 요구하는 실질적 변형을 이루어야 MFN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특혜원산지 규정

중국은 2002년 1월 1일부로 ‘방콕협정’(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하의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발효시켰다. 이것이 ‘Provisional Rules of Origin for Imports under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다. 그 수혜대상국은 Korea, Bangladesh 및 Sri Lanka이며 Bangladesh는 최빈개도국으로 취급된다.¹⁶⁸⁾ 수혜대상품목은 수혜대상국이 원산지인 지정된 품목¹⁶⁹⁾의 제품인바, 수혜대상국

168) Annex 1, Provisional Rules of Origin for Imports under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69) 1976년 6월 발효된 방콕협정은 2000년 중국의 가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제품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 우선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완전 획득(wholly obtained) 기준’이 적용된다.¹⁷⁰⁾
- 2) 여러국가가 생산과정에 참여한 경우, 제품의 제조나 공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부품·구성품이 제품의 FOB가치의 50% 미만이며,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수혜대상국이어야 한다.¹⁷¹⁾ 최빈개도국의 경우에는 위 기준은 60%가 된다.¹⁷²⁾
- 3) 수혜대상품목은 수혜대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직접 수입(transported directly)되어야 한다. “직접 수입”된다함은 비수혜대상국의 영역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거치더라도 “지리적 불가피성”이나 “운송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제품이 하역, 적재, 상태보존을 위한 단

었으며, 참여국들은 총 782개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교환하고 있다. 중국이 지정하고 있는 방콕협정 대상 품목은 “live animals, live fish, frozen fish, mushroom, tropical fruits, tea, penicillin 등 일부 의약품, shampoo, soap, polyethylene, handbag, 섬유 및 의류제품, 보석류, washing machine, drill, 일부 전자제품, TV receivers” 등 760여개에 이른다. 아울러 중국은 최빈개도국인 방글라데시에게는 일부 어류, 섬유 제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더욱 인하된 특혜관세율을 양허하였다.

170) Id. 제3조 1항.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a given beneficiary country” means: (1) Mineral products extracted from its soil or territorial waters of that country; (2) Vegetable products harvested or gathered in its soil or territorial waters of that country; (3)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at country and products obtained from live animal in that country; (4) Products obtained from hunting, trapping or fishing conducted in its soil or territorial waters of that country; (5) Products of sea-fishing and other products taken from high sea by a vessel of that country; (6) Products obtained aboard a factory ship of that country solely from products of referred to in paragraph (5) above; (7) Scrap and waste collected in that country and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8) Scrap and waste derived from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in that country; (9) Goods obtained or produced in that country solely from the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8).”

171) Id. 제3조 2항. “Where a product is not wholly obtained in a beneficiary country and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parts or components used in the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f the product is less than 50% of the FOB value of that product,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roduct shall be the beneficiary country where the last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has been carried out.”

172) Id. 제8조.

순공정을 넘어 사용, 거래, 소비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야 한다.¹⁷³⁾

따라서 개성공단 제조 상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상기 방콕협정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스리랑카, 또는 방글라데시에 반입되어 50%이상(방글라데시의 경우는 40%이상)의 한국, 스리랑카, 또는 방글라데시산 재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상기 지정품목을 완성한 후 가급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 한국 및 중국과 더불어 방콕협정의 회원국이므로 이들 간에 섬유 및 의류제품을 포함한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교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생산 원단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 봉제공장에서 섬유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들 회원국으로 수출하면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3. 일본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우선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 일본 ‘관세법’¹⁷⁴⁾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¹⁷⁵⁾ 또한, 이러한 기준에 관한 규정은

173) Id. 제4조. “‘Direct Transportat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The goods have not been transported through the Customs territory of a non-beneficiary country; (2) The goods passed through the Customs territory of one or more non-beneficiary country, but the transit could be justified by the geographical reason and the requirement of transportation, and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not been used, transacted, consumed or otherwise proceed except simple processing operation in order to load, unload or keep the goods in good condition for shipment.”

174) 關稅法 (Customs Law) (昭和二十九年四月二日法律第六十一号) .

175) 일본 관세법 제71조(原産地を偽つた表示等がされている貨物の輸入) 및 제87조(原産地を偽つた表示等がされている貨物の留置) 참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실제로 원산지 판정 기준은 세관의 업무지침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⁷⁶⁾ 일본 세관은 대체로 실질적 변형기준을 재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 북한산으로 판정되어 WTO협정상의 MFN관세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¹⁷⁷⁾

다음으로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서, 일본 ‘관세잠정조치법’¹⁷⁸⁾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수혜대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지정된 물품”(特惠受益國等 ...を原産地とする次の各号に掲げる物品で)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¹⁷⁹⁾ 그러나 이러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로 수입이 증가하여 일본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는 특혜관세 부여가 정지된다.¹⁸⁰⁾

이때, 수혜대상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한 정의에 대해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¹⁸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76) 일본세관이 MFN세율부과의 목적상 원산지 지침(Customs Directive)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문안을 입수하기가 곤란하다.

177) 일본의 관세율의 종류는 관세정률법상(Customs Tariff Law)에 분류된 제품별로 규정된 ‘일반관세율(General Rate)’, WTO회원국에게 적용되는 ‘MFN세율(WTO Rate)’, 개도국특례를 규정한 관세잠정조치법상의 ‘잠정세율(Temporary Rate)’, 그리고 FTA 회원국 등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율(Preferential Rate)’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관세율은 MFN세율보다 다소 높은 경우가 많으나, 그 차이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78) 關稅暫定措置法 (Temporary Tariff Measures Law) (昭和三十五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三十六号) .

179)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2. 최빈개도국이 원산지인 일정한 상품(特別特惠受益國を原産地とする…物品)에 대해서는 특혜의 폭이 증가한다. Id. 제8조의2 3항. 이러한 특혜관세율은 품목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세잠정조치법 別表第一부터 別表第五까지에 구체적 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180)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3(特惠關稅の適用の停止の原則等) .

181) 關稅暫定措置法施行令 (Cabinet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Temporary Tariff Measures Law) (昭和三十五年三月三十一日政令第六十九号) .

- 1) 수혜대상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제품(完全に生産された物品)”
- 2) 그렇지 않은 경우, 수혜대상국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 변경(實質的な變更)”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생산한 제품¹⁸²⁾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¹⁸³⁾은 “완전히 생산”된 제품 기준에 대한 제품종류별 정의를 두고 있으며,¹⁸⁴⁾ “실질적 변경” 기준으로는 별도의 표를 두어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1) 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 2)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을 요구, 3) 일정 비율(대체로 40%, 예외적으로 50%¹⁸⁵⁾) 이하의 비원산지재료 사용(非原産品割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¹⁸⁶⁾

이중 3)의 요건은 항상 1) 및 2)요건에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때, 단순한 수송 및 보존상의 건조, 냉동, 절단, 선별, 포장, 분리, 병입, 비원산지제품의 혼합, 부품조립 등은 실질적 변경을 발생하는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¹⁸⁷⁾

이상을 개성공단 문제와 결부시켜 개성공단 제품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상의 개도국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은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의미의 개발도상

182)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 1항.

183) 關稅暫定措置法施行規則 (Ordinance of Ministry of F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Temporary Tariff Measures Law) (昭和四十四年七月一日大藏省令第三十九号) .

184) 자국의 영역내에서 채굴된 광물, 재배된 식물, 양육된 동물, 동물로부터 획득된 제품, 어획한 수산물, 원재료를 획득하기 위해 수집된 부산물 등이 원산지제품이 되며, 영해이원에서 어획하거나 어획물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의 경우 이를 어획한 선박의 합법적인 기국이 원산지국이 된다. 아울러 이상의 제품들로부터 생산한 제품도 그 국가의 원산지제품이 된다.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8조.

185) 대부분 40% 비원산지 재료 기준이 적용되나, 39.07(仕上劑, 促染劑、媒染劑その他の物品及び調製品)의 경우 50%기준이 채택되어 있다. 이는 일본국내의 피혁·제지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 보여진다. 66.01(傘), 70.13(ガラス製品), 96.06(レスタッド並びにこれらの部分品) 등에도 50%기준이 채택되어 있다.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別表(第九條關係) .

186)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9조 및 別表(第九條關係) 참조.

187) Id.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국입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도상국(特惠受益國)”에 대해 개도국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⁸⁸⁾ 이에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은 별표 1에서 규정한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⁹⁾ 별표 1에서는 특례대상 개도국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에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¹⁹⁰⁾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가 북한으로 판정되는 한 개도국 특혜관세인 ‘잠정관세(Temporary Rate)’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관세율(General Rate)’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 실질적 변형을 거친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 상당수의 품목에서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MFN세율(WTO Rate)’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상기 별표 1은 수단, 시리아, 베트남, 리베리아, 타지크스탄, 미얀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리비아, 라오스, 쿠바,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등의 국가에 대해 잠정관세(Temporary Rate) 혜택이 주어지는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⁹¹⁾ 이들 국가는 미국에 의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함을 주의해야 한다.¹⁹²⁾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을 이들 국가들에 수출하여 실질적 변형을 거친 후,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 잠정관세(Temporary Rate)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나,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개도국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에 의해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일본에 의해서는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성공단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여 실질적 변형을 거치게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편이 관세율 혜택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188)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2.

189)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49조.

190)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별표1.

191)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별표1.

192) General note 4 of 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한편,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FTA(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특혜원산지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싱가폴 FTA는 우선 싱가포르내에서 “완전히 생산한(wholly obtained)”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고,¹⁹³⁾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충분한 변형(sufficient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¹⁹⁴⁾ “충분한 변형”이란 부속서 상의 세번변경,¹⁹⁵⁾ 제조 공정, 지역가치 포함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은 “선택적으로(alternatively)” 적용되는 바, 어느 한 기준만 만족하게 되면 원산지 판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싱가폴 FTA의 지역가치 포함 요건은 60%이상의 가치를 역내에서 부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제조나 생산활동의 최종단계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⁹⁶⁾ 이러한 지역가치 포함요건이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alcoholic beverages (other fermented beverages, liqueurs and cordials), mineral oils (light oils and preparations, petroleum oils etc.), chemicals, metals, silicon dioxide, ammonia, butan, dyes, pigments, paints, inks, glues, solvents, plastics (polyethylene, polypropylene etc.), rubber, paper, cooper, zinc, sunglasses, electronics, fishing tools, etc.”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때, 단순한 수송 및 보존상의 건조, 냉동, 절단, 선별, 포장, 분리, 병입, 비원산지제품의 혼합, 부품조립 등은 실질적 변경을 발생하는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¹⁹⁷⁾

193) 일-싱FTA 제23조 1항.

194) Id. 2항.

195) 대개 4단위 세 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부속서 IIA.

196) Id. 5항.

197) Id. 제26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이밖에도 일-싱가폴 FTA는 ‘accumulation’, ‘de minimis’, ‘unassembled or disassembled goods’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¹⁹⁸⁾

개성공단 제품들이 싱가포르로 수출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친후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동 제품이 일-싱가폴 FTA상의 특혜관세(Preferential Rate 또는 Singapore Rate)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내에서 최종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싱FTA 부속서 상에서 요구되는 세 번 변경을 싱가포르내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번 변경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위에서 나열한 지역가치 포함 요건 적용품목의 경우에는 60%이상의 가치를 싱가포르내의 생산과정을 거쳐 창출한다면 일본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 EU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가. 비특혜원산지 규정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원산지표시, 반덤핑, 상계관세, 무역제재,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관세할당 및 통계 목적상 활용되는데 더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른 수출시 관세환급(export refund)제도의 운영을 위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근거 법규는 ‘Community Customs Code’(“CCC”)¹⁹⁹⁾의 제22 - 26조 및 ‘Implementing Procedure Code’(“IPC”)²⁰⁰⁾의 제35 - 65조이다.

CCC는 우선 단일국 생산제품에 대해 “완전 획득(wholly obtained)”기준을 채택하고 있다.²⁰¹⁾ 그리고 복수국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최종적

198) Id. 제24, 25조, 28조.

199) Council Regulation No. 2913/92.

200) Commission Regulation No. 2454/93.

201) “완전 획득” 제품이란 아래를 의미한다.

“(a) mineral products extracted within that country; (b) vegetable products harvested therein;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in; (d) products derived from live animals

으로 실질적임(substantial)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합당한(economically justified) 제조나 작업이 행해진 결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의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²⁾ 이는 일종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당해 제조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상기 규정을 우회(circumvent)하여 특정국가의 원산지 판정을 받기 위한 것임이 입증되거나 이를 추정할만한 정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는다.²⁰³⁾ 이는 우회방지 규정이다.

EU의 관세율표 Section XI에 포함된 섬유·섬유제품과 기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복수국 생산의 경우에 있어 IPC하의 특별 원산지 규정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raised therein; (e) products of hunting or fishing carried on therein; (f) products of sea-fishing and other products taken from the sea outside a country's territorial sea by vessels registered or recorded in the country concerned and flying the flag of that country; (g) goods obtained or produced on board factory ships from the produc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f) originating in that country, provided that such factory ships are registered or recorded in that country and fly its flag; (h) products taken from the seabed or subsoil beneath the seabed outside the territorial sea provided that that country has exclusive rights to exploit that seabed or subsoil; (i) waste and scrap products derived from manufacturing operations and used articles, if they were collected therein and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j) goods which are produced therein exclusively from goo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o (i) or from their derivatives, at any stage of production.” CCC 제23조 2항.

202) “Goods whose production involved more than one country shall be deemed to originate in the country where they underwent their 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in an undertaking equipped for that purpose and resulting in the manufacture of a new product or representing an important stage of manufacture.” CCC 제24조.

203) “Any processing or working in respect of which it is established, or in respect of which the facts as ascertained justify the presumption, that its sole object was to circumvent th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ommunity to goods from specific countries shall under no circumstances be deemed to confer on the goods thus produced the origin of the country where it is carried ou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4.” CCC 제25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 1) 섬유·섬유제품은 생산에 사용된 “각종 비원산지재료의 관세율표상의 ‘heading’과 상이한 ‘heading’에 해당하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제조행위가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²⁰⁴⁾ 이는 세 번 변경(tariff shift)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단, IPC Annex 10에 기재된 섬유제품²⁰⁵⁾의 경우에는 이러한 ‘heading’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동 Annex상에서 규정된 특정 공정²⁰⁶⁾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특정공정 기준). 아울러 IPC는 일정한 ‘불인정공정’을 규정하여 이러한 공정에 의해 세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Annex 10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배제하고 있다.²⁰⁷⁾
- 2) Annex 11에 규정된 제품²⁰⁸⁾은 각각 동 Annex상의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국으로 인정된다.

204) IPC 제36, 37조.

205) 주로 “wool, cotton, man-made fibres, yarn, woven fabrics, felt, rubber thread, cord, rope, cables, carpets, textile fabrics, linoleum, rubberized textile fabrics, textile wicks,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handkerchiefs, blankets, bed linen, curtains, worn clothing” 등 5101에서 6309사이의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IPC Annex 10 참조.

206) Annex 10은 품목별로 공정을 지정해놓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5-50%사이의 비원산지재료 포함 한계 기준도 부가하고 있다. IPC Annex 10, IPC 제40조 참조.

207) IPC 제38조, “(a)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b) 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cutting up; (c) (i) changes of packing and breaking-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ii) simple placing in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etc., and all other simple packing operations; (d) the affixing of marks, labels or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e) 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f)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a) to (e).”

208) “Meat, offal, egg, cotton linters, grape juice, wine, vermouth, felt, apparel of leather, ceramic calendar, footwear, ceramic tableware, ball, magnetic tape recorder, TV receiver, videotuner, integrated circuit, ceramic lamps, watch straps” 등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IPC Annex 11 참조.

위의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적용해 보자. Annex 10상의 섬유·섬유제품 및 Annex 11상의 제품들 이외의 제품은 CCC상의 일반 원산지 판정원칙이 적용되므로 북한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어 개성공단에서 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북한원산지가 판정될 것이다. 다만, 한국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한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임(substantial)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합당한(economically justified) 제조나 작업”이 행해져야 하므로 개성공단에서는 형식적인 최소 가공 작업만 하고 한국에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후 EU로 수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섬유나 섬유제품 및 Annex 11 제품의 경우에는 동 Annex상의 세번변경·특정공정·비원산지재료 포함비율 요건 등이 한국에서 행해진 제조행위를 통해 충족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개성공단에서는 비실질적인 가공이나 불인정공정 위주로 생산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개성공단의 설립취지와 합치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개성공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 생산제품의 원산지는 EU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 요건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각 검토하여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부분 작업을 수행하고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의 종류 및 한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특혜원산지 규정

EU의 특혜원산지규정은 EU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특혜(GSP 등)의 경우에는 IPC에 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국과의 협정에 의해 부여한 협정상 특혜의 경우는 각각 해당 협정에 규정을 두고 있다.²⁰⁹⁾ 이러한 EU의 특혜원산지규정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9) CCC 제27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 EFTA countries >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Switzerland	Industrial products (01.01.1973)	Free Trade Agreement of 22.07.1972 (OJ L 300, 31.12.1972, p.189)	Protocol No 3
	Agricultural products (01.06.2002)	Agreement of 21 June 1999 on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OJ L 114, 30.4.2002, p.132)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reference to EFTA Protocol No 3)
Iceland (01.04.1973)		Free Trade Agreement of 22 July 1972 (OJ L 301, 31.12.1972, p.2)	Protocol No 3
Norway (01.07.1973)		Free Trade Agreement of 14 May 1973 (OJ L 171, 27.06.1973, p.2)	Protocol No 3
European Economic Area (EC-IS-NO-LI)		Association Agreement of 2 May 1992 (OJ L 1, 03.01.1994, p.3)	Protocol No 4

<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Bulgaria (31.12.1993)		Europe (Association) Agreement of 8 March 1993 (OJ L 358, 31.12.1994, p.3.)	Protocol No 4
Romania (01.05.1993)		Europe (Association) Agreement of 1 March 1993 (OJ L 357, 31.12.1994, p.2.)	Protocol No 4

< *Western Balkan countries* >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Macedonia (Former Yugoslav Republic of) (01.06.2001)	Interim Agreement of 9 April 2001 (OJ L 124, 04.05.2001, p.2.)	Protocol No 4
Croatia (01.01.2002)	Interim Agreement of 29 October 2001 (OJ L 330, 14.12.2001, p.3.)	Protocol No 4

< *Mediterranean Countries* >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Turkey (products outside the scope of the customs union)	ECSC products (01.01.1997)	Agreement of 25 July 1996 (OJ L 227, 07.09.1996, p.3.)	Protocol No 1
	Agricultural products (01.01.1998)	Decision No 1/98 of the Association Council, of 25 February 1998 , OJ L 86, 20.03.1998, p.1.)	Protocol No 3
Algeria (01.07.1976)		Cooperation Agreement of 26 April 1976 (OJ L 263, 27.09.1978, p.2.)	Protocol No 2
Tunisia (01.03.1998)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of 17 July 1995 (OJ L 97, 30.03.1998, p.2.)	Protocol No 4
Morocco (01.03.2000)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of 26 February 1996 (OJ L 70, 18.03.2000, p.2.)	Protocol No 4
Israel (01.06.2000)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of 20 November 1995 (OJ L 147, 21.06.2000, p.3.)	Protocol No 4
Palestinian AUTHORITY (01.07.1997)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of 24 February 1997 (OJ L 187, 16.07.1997, p.3.)	Protocol No 3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Egypt (01.07.1977)	Euro-med Association Agreement L304 of 30/09/2004	Protocol No 4
Jordan (01.05.2002)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of 24 November 1997 (OJ L 129, 15.05.2002, p.3.)	Protocol No 3
Lebanon (01.03.2003)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of 17 June 2002 (OJ L 262, 30.09.2002, p.2.)	Protocol No 4
Syria (01.07.1977)	Cooperation Agreement of 18 January 1977 (OJ L 269, 27.09.1978, p.2.)	Protocol No 2

<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Andorra (agricultural products outside the scope of the customs union)	Agreement (OJ L 374, 31.12.1990, p.14.)	Appendix to the Agreement
Faroe Islands/Denmark (01.01.1997)	Agreement of 6 December 1996 (OJ L 53, 22.02.1997, p.2.)	Protocol No 3
Africa ,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 (ACP) (01.04.2003)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ACP, EC and Member States, signed in Cotonou on 23 (OJ L 317, 15.12.2000, p.3., OJ L 65, 08.03.2003; OJ L 83, 01.04.2003; provisional application from 01.03.2000)	Protocol 1 to Annex V
South Africa (01.01.2000)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provisional application (OJ L 311, 4.12.1999, p.3.)	Protocol 1

4. EU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Mexico (01.07.2000)	Decision 2/2000of the EC-Mexico Joint Council: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Partnership Agreement (OJ L 157, 30.06.2000, p.10. and OJ L 245, 29.09.2000, p.1.)	Annex III to the Decision
Chile (01.02.2003)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Association Agreement (OJ L 26, 31.1.2003, p.52; OJ L 352, 30.12.2002, p.3.)	Annex III to the Agreement

< *Autonomous preferential arrangements* >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Preferential Arrangement	Rules of Origin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02.12.2001)	Council Decision No. 2001/822/EC of 27 November 2001 (OJ L 314, 30.11.2001, p.1.; Appendix 2to Annex III, OJ L 324, 7.12.2001, p.1.)	Annex III to the Decision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Council Regulation (EC) No. 2501/2001 of 10 December, (OJ L 346, 31.12.2001, p.1.)	Articles 66 to 97 (Commission Reg. (EC) No. 2454/93 of 2 July 1993)
WESTERN BALKANS COUNTRIES (Albania , Bosnia and Herzegovina , Serbia and Montenegro)	Council Regulation (EC) No. 2007/2000 of 18 September, (OJ L 240, 23.09.2000, p.1.)	Articles 66 and 98 to 123 (Commission Reg. (EC) No. 2454/93 of 2 July 1993)
Ceuta and Melilla	Protocol No 2 to the Act of Accession of Spain	Council Regulation (EC) No. 82/2001 of 5 December 2000 (OJ L 20, 20.01.2001, p.1.)

① 개도국 특혜관세(GSP) 부여를 위한 원산지 규정

2004년 말 현재의 EU의 GSP제도는 ‘Council Regulation No 2501/2001’²¹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EU가 지정한 “수혜대상국가”²¹¹⁾가 비민감품목²¹²⁾에 해당하는 제품을 EU에 수출하게 되면 관세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단, ‘섬유 및 의류제품’은 2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에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의 경우는 3.5%의 감면이 주어짐에 그치게 된다. 이밖에도 ILO 기준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국내입법을 한 국가, 국제기준의 열대우림 보존에 관한 국제표준 (International

210) OJL 346 of 31.12.2001.

211) Annex 1 of Council Regulation No 2501/2001은 수혜대상 개도국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212) Council Regulation No 2501/2001 Annex IV에 민감품목의 목록이 지정되어 있다.

Tropical Timber Organization)을 준수하는 국가, 및 마약 및 밀수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추가적으로 5%의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를 두고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에게는 ‘무기류’와 ‘탄약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서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²¹³⁾

이렇게 EU는 수혜대상국가가 원산지인 일정한 품목에 대해 GSP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은 IPC에 규정되어 있다.²¹⁴⁾ 우선 IPC는 “완전 획득(wholly obtained)”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²¹⁵⁾ 다음으로 복수국 생산의 경우에는 “충분한 제조나 공정(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본다.²¹⁶⁾ IPC는 Annex 15를 두어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제조 및 공정기준을 두고 있다.²¹⁷⁾ 이러한 품목별 기준은 대개 1) 완전히 획득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 인정하거나, 2) 특정 제조나 공정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거나, 3) 원산지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하는 특정 제조나 공정 규정하거나, 4) 위의 서로 다른 요건을 상호 결합하여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품목들이 위 기준과는 별도로 “비원산지재료의 제품가치에 대한 포함비율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기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당해 제품의 구입가치(ex-works price)의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당해 제품의 수출자가 원산

213) Regulation No 416/2001 of 28 February 2001 (“Everything But Arms Initiative”). 그러나 실제로 바나나는 2002년부터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었으며, 쌀과 설탕은 2006-2009간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점 이전에는 관세할당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양에 대해 관세면제를 취하고 있다. Regulation No 1381/2002 & 1401/2002.

214) IPC 제66-97조, Council Regulation No 2501/2001 제5조 2항.

215) IPC 제67.1(a), 68조.

216) IPC 제67.1(b)조.

217) IPC Annex 15 참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지 지위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²¹⁸⁾ 이렇게 비원산지재료의 포함 한계규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전술한 섬유제품등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위한 Annex 10 및 11에서 이러한 한계규정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는 GSP목적상 개도국의 수혜요건을 가급적 완화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IPC GSP원산지규정은 불인정 공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며,²¹⁹⁾ “de minimis” 기준은 10%가 채택되어 있다.²²⁰⁾ 특히 수혜대상국이 속한 일정한 지역무역협정 구성국가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원산지 가치를 상호 누적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regional cumulation”)²²¹⁾은 원산지 판정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수혜대상국간의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indirect materials” 등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²²²⁾ 이상을 개성공단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개성공단 제품이 EU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는 EU의 GSP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EU의 GSP수혜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²²³⁾ 흥미로운 점은 상기 명단에는 미국이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쿠바, 중국, 이란,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수혜대상 개도국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을 이들 수혜대상 국가들에 수출하여 IPC Annex 15에서 규정한 “충분한 제조나 공정(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을

218) IPC Annex 14, Note 2.4 “Where, for an entry in the first two columns, a rule is specified in both columns 3 and 4, the exporter may opt, as an alternative, to apply either the rule set out in column 3 or that set out in column 4.”

219) IPC 제70조 참조.

220) IPC 제71조 참조. Chapter 50-63 제품은 ‘de minimis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221) IPC 제72조.

222) IPC 제73 - 75조.

223) Annex 1 of Council Regulation No 2501/2001 참조.

거친 후 EU에 수출하게 되면, GSP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동 Annex상의 제조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 상당한 수의 품목에서 선택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비원산지재료 포함 비율’을 활용하여 원산지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및 EU에 의해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일본에 의해서는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여 “충분한 제조나 공정(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을 거친 후 EU에 수출하여 GSP 혜택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기타 EU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혜가 부여되는 경우의 원산지규정

EU의 해외 속령 및 EU가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Serbia and Montenegro’ 등의 국가 제품에 대해서는 위 GSP목적의 원산지 기준과 거의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즉, “wholly obtained” 기준 및 Annex 15상의 “충분한 제조나 공정(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요건이 역시 적용되게 된다.²²⁴⁾

③ EU가 협정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교환하고 있는 경우의 원산지 규정

EU가 타국과 맺은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완전 획득(wholly obtained) 기준’과 ‘충분 공정(sufficiently worked) 기준’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상협정과 품목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기준은 각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s)의 부속서에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여하튼, 대부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요건들이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4) IPC 제98 - 106조.

IV.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 1) 완전히 획득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 인정
- 2) 특정 제조나 공정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정
- 3) 원산지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하는 특정 제조나 공정 규정
- 4) 원산지를 인정하기 위해 부가되어야 하는 가치 규정
- 5) 위의 서로 다른 요건을 상호 결합
- 6) 위의 서로 다른 요건을 선택적으로 부과 (대개 특정 제조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를 일정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개성공단 생산재료가 이들 국가들에 수출되어 가동된 후 완제품이 EU로 최종 수출되는 경우, 위 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 충분 공정 기준 또는 비원산지재료 포함비율을 충족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V. FTA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1. 역외가공 예외 인정관련 국제협상을 위한 표준 원산지기준의 수립

한-싱가폴 FTA에서 비원산지 투입가치와 원산지 재료가치의 기준을 40%와 45%로 채택하고, 한-EFTA FTA와 한-ASEAN FTA에서 그것을 40%와 60%로 상향조정된 것은 모두 WTO협정 위반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들 FTA에서 역외가공 인정 대상제품을 각각 달리 한정하여 인정한 것과 기타 한국내의 최종공정과 관련한 실체적 요건을 부과한 것도 국제법 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결하는 FTA대상국간 상이한 역외가공 인정 기준이 채택되게 되면, 실제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이들 국가들로 수출될 때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복잡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현재 경기도 파주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²²⁵⁾ 이제부터라도 남북한 경험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원산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나름대로 일종의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마련하여 역외가공 인정 대상 품목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목록을 사정변경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비원산지 투입가치와 원산지 재료가치 간의 비율요건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내 최종공정 요건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이러한 표준조항에 의거하여 외국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통일된 남북관계 조항을 FTA에 규정해나감으로써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거래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조항의 마련은 ‘개성공업

225) “파주에 개성공단 상응하는 경제특구 조성” (2008.6.29 동아일보 기사 참조).

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나 지침에 정부가 이러한 표준문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 협상할 의무를 규정하거나 표준 및 기준 자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조항에서 설정된 기준은 가급적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남한으로의 반입시에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남한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규정하면서, 제3국에 대해서는 민족내부거래 논리에 따라 남한산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규정된 남북한 거래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맺어, 일정한 표준 비원산지 투입가치/원산지 재료가치 비율을 한국산 인정의 조건으로 규정하던지, 우리 국내 법으로 통일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민족내부 거래” 논리의 국내법적 수정 및 국제적 지지 획득 노력 전개

더 나아가서는 허구적인 국내법상의 민족내부거래 논리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 5 조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는 논리는 WTO협정의 근본구조에 대한 몰이해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상품분야의 일반협정인 GATT가 전통적으로 “국가(country)”라는 표현을 사

2. “민족내부 거래” 논리의 국내법적 수정 및 국제적 지지 획득노력 전개

용해왔으나,²²⁶⁾ WTO설립협정의 주해에 의해 “국가”라는 단어에는 “독립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게 되었다.²²⁷⁾ 따라서 WTO체제가 출범한 지금에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국가”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독립관세영역에 대해서도 WTO협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WTO설립협정이 독립관세영역에 대해 WTO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²²⁸⁾ 그러므로, 우리 국내법에서 남북한 거래가 WTO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논거로 “민족내부거래”로서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로 비논리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삭제해 버리거나, 이를 개정하여 “남북한은 외세에 의한 분단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증진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므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의무조항들이 남북한 간의 우호적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문구로 대체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논리성을 갖추게 되며, 국제적으로 호소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상의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도 개정해야 한다.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가 아니고, “국제평화와 우호증진을 위한 분단국교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이라는 정도의 문구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26) GATT 제1조 (“...any other country...”) 등 참조.

227) WTO설립협정 주해 (“Explanatory Notes: The terms “country” or “countries” as used in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re to be understood to include any separate customs territory Member of the WTO.”).

228) WTO설립협정 제12조 1항.

V. FTA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한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산 반입제품에 대한 무관세조치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우 WTO회원국들이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특혜부여에 대해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주장 및 보조금협정에 기한 청구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남북한 특혜교역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WTO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하거나, 남북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인 것이고,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²²⁹⁾

229) 남북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물론 한국과 북한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협정 당사국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상호 경제체제의 의존성과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러한 부담을 지고 협정체결에 동의하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 경제간 경제의 기본구조가 유사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체제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의 실행상 무수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도적 접근을 위한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셋째, 지역무역협정 체결 당사국간의 상호 신뢰회복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는 이상적인 제도와 불안정한 현실간의 마찰을 초래하여 경제통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휴전협정 체제가 좀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된 후 남북한 지역무역협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북한이 상호 간섭을 파견하고 언제라도 무력행사 및 테러를 가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환경하에서 성급하게 설립된 지역무역지대는 또다른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 WTO에 가입해야 한다. 지역협정 당사국간의 특혜교환이 GATT 제I조의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WTO회원국간” 지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최원목,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3호 pp.9-10 참조. 한편 WTO에서 의무면제를 얻기 위해서는 WTO각료회의에서 전체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면제의 부여에는 기한 및 조건 등의 제한이 있고, 추후에도 매년 면제제도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각료회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그러므로 가장 현실적이고 당장 실현가능한 방안은 향후 체결될 한국과 여러나라와의 모든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에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유사한 내용의 특별규정을 그때그때 삽입해나가는 방안이다. 즉, “한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국은 한국과 북한이 양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치들을 채택, 유지, 적용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Taking into account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ing ou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the other Party] agrees that it shall not object to adopting, maintaining or applying special arrangements by the two economies with respect to the trade between them.)”라는 공통된 문안을 삽입함으로써,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이 남북한 간의 특혜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약속을 미리 받아낼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양자적 약속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 계약국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게 되면 WTO의무면제나 GATT상의 특별규정을 획득한 것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사실상의 다자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실제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의무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바, 이러한 FTA를 통한 양자적 노력을 미리 기울여 놓는 것은 그 때 큰 힘이 될 수 있다.

우리정부는 뉴질랜드와 FTA를 위한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 중인바, 뉴질랜드와의 FTA는 이러한 특별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뉴질랜드는 자국 내의 소수민

절차적 요건에 더해, 면제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하에서만 부여된다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제 부여가 부인된 예도 있다. 즉, 1969년 EEC의 이스라엘 및 스페인산 감귤류 관세감축을 위한 면제 요청 및 1970년 그리이스의 소련산 제품에 대한 특혜부여 요청 등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Ibid.

V. FTA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족인 마우리(Maori)족에게 특별대우를 부여해오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조약(Treaty of Waitangi)을 FTA상의 각종 의무로부터 포괄적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례는 우리측이 한-뉴질랜드 FTA에 남북한 특수관계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용이하게 원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뉴질랜드와 이러한 특수상황에 관한 조항을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남북한 관계조항을 삽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남북관계 조항을 한-뉴질랜드 FTA에서부터 규정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도 유사한 조항을 삽입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도 유사 조항을 삽입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이러한 FTA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의무면제(waiver)획득이나 남북한 지역무역협정 체결노력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다자적인 노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적 노력은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어 나가되, 지금 당장 복수국과 FTA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마당에서 남북한 특수관계 조항을 가능한 한 많이 삽입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이러한 FTA를 통한 해결방안은 중장기적인 의무면제 획득을 위한 교섭을 미리 관련국가들과 하나하나 진행해두는 의미가 있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의무면제 획득이 다자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에도 여러나라와 FTA를 통해 축적해놓은 다수의 양자적 양해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그 나름대로 남북한 특혜교역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하는 ‘사실상의(de facto) 다자적 의무면제의 효과’를 영구적으로 발휘하게 됨을 주목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남북관계에 관한 특별조항 문안은 정부가 우리 ‘FTA 표준 협상 문안’을 제정하게 되는 경우 그 필수적 사항

으로 포함시켜, 향후 체결하는 FTA에 공통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필자가 제안한 대로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의무조항들이 남북한 간의 우호적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문안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개정하게 되는 경우, 그 구체적 실천의 의미가 있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결책의 국내법적인 매력은 우리정부가 남북한 특혜교역의 정당성 논리를 포기하거나 그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의무면제 획득 방안의 경우, 의무면제를 신청하는 자체가 남북한 특혜교역의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인데 반해, FTA상의 조항삽입 방식은 오히려 “남북한은 외세에 의한 분단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증진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의무조항들이 남북한 간의 우호적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내적 입장을 국제법적으로 구현하는 의의가 있게 된다.

혹자는 FTA상의 남북한특수관계 조항의 존재가 오히려 남북한 특혜교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폭시키게 됨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 특혜교역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과거의 상황 하에서 한국의 대북한 경협정책이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관용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다. 남북한 경협이 본격화되고 남북한 간의 자주적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영향력 있는 수출기업의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국가의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유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미래의 세계에서는 남북한 교역의 국제적 정당성을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내법제의 국제통용성을 확보해나가면서 다각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 론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남북한관계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는바, FTA 적용의 지리적 범위 조항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FTA 적용범위 조항의 경우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 조항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에 FTA를 시행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추후 우리가 체결하는 FTA에서는 가급적 한-미FTA상의 적용범위 조항과 같은 문안을 채택하여 입법의도와 해석이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조항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판정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WTO 통일원산지 규정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WTO협정을 비롯한 다자통상규범 위반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역외가공 인정 기준의 채택으로 복잡성이 증가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남북한 경험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원산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나름대로 일종의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마련하여 역외가공 인정 기준을 통일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표준조항에서 설정된 기준은 가급적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남한으로의 반입시에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FTA체결로 개성공단이나 제2의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제품이 FTA미체결국에 수출되거나 향후 체결될 FTA상에서 역외가공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역외가공을 인정하게 되는 시점까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주요국으로부터 한국 원산지

V. 결 론

관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한 각국의 국내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업체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법상의 남북경협의 정당화논리인 “민족내부거래” 논리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한편, 북한산 반입제품에 대한 무관세조치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향후 체결될 한국과 여러나라와의 모든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에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유사한 내용의 특별예외규정을 그때그때 삽입해나가는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법제의 정비를 통해 남북한관계에 관한 특별조항의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과 협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남북한 특혜교역에 대한 WTO 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 획득이나, 남북한 지역무역협정 체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부 록

< 부록 1: 한-EFTA FTA상 특별 영역원칙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 >²³⁰⁾

제 39 류 플라스틱제 그 제품

390710, 390720, 390810, 391000, 392113, 392310, 392330, 392350, 392390,
392690

제 40 류 고무의 그 제품

401699

**제 42 류 가죽제품 - 마구 - 여행용구 -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드(누대의 거드뿐 제외한다)의 제품**

420211, 420212, 42022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베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10,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1,
610312, 610319, 610321,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1, 610421,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10, 611420,
611430, 611490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베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1,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10,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2,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10,

230) 한-EFTA FTA 부속서 I의 부록 4.

부 록

620920, 62093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1, 621132, 621141, 621142, 621143, 621149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299, 640399, 640411, 64061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1590

제 71 류 원연 또는 양식전주·귀쇠 또는 만귀쇠·귀금속·귀금속을 일련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보조선변장석용종과 주화
711719, 711790

제 73 류 원장의 제품
732393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멧트, 이들의 제품
810990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잡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730, 821300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230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8590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부록 1: 한-EFTA FTA상 특별 영역원칙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 >

850431, 851220, 85119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90,
853929, 854091

제 87 류 **휠도 또는 궤도용 의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991, 871499

제 90 류 **항공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렬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2,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2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1, 910919,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20, 911430, 911440, 911490

제 96 류 **잡품**
961610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브루나이 다루살람

연번	HS 코드	품명
1	4010.00	- - 기타
2	4202.11	- - 외부표면이 가죽-용포지션레더 또는 케이트르레더제의 것
3	4202.1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제의 것
4	4202.19	- - 기타
5	4202.21	- - 외부 표면이 가죽-용포지션레더 또는 케이트르레더제의 것
6	4202.22	-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것
7	4202.91	- - 외부표면이 가죽-용포지션레더 또는 케이트르레더제의 것
8	4202.9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것
9	4202.99	- - 기타
10	5811.00	원단상의 합성섬유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직과 조합한 섬유 이상의 합성섬유 함유로 만든 것에 한하여,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11	6107.11	면제의 것
12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13	6107.19	-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14	6107.91	- - 면제의 것
15	6107.92	- - 인조섬유제의 것
16	6107.99	-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17	6108.21	- - 면제의 것
18	6108.22	- - 인조섬유제의 것
19	6108.29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20	6108.91	- - 면제의 것
21	6108.92	- - 인조섬유제의 것
22	6108.99	-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23	6109.10	- 면제의 것
24	6111.20	- 면제의 것
25	6116.19	-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26	6116.20	- 여자용의 전갈이 또는 부를갈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제시텍스리란의 것
27	6116.92	- - 면제의 것
28	6116.99	- - 합성섬유제의 것
29	6118.99	-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30	6117.10	- 스웨트-셔츠-머플러-만일라-패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 넥타이류
32	6117.90	- 부속품
33	6201.1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34	6201.12	면제의 것
35	6201.13	- - 인조섬유제의 것
36	6201.92	- - 면제의 것
37	6201.93	- - 인조섬유제의 것
38	6202.12	- - 면제의 것
39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40	6202.92	- - 면제의 것
41	6202.93	- - 인조섬유제의 것
42	6203.12	- - 합성섬유제의 것
43	6203.19	-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부 록

44	6203.21	-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45	6203.31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46	6203.32	- - 면제의 것
47	6203.33	- - 합성실유계의 것
48	6203.42	- - 면제의 것
49	6203.43	- - 합성실유계의 것
50	6203.49	- -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51	6204.11	-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52	6204.12	- - 면제의 것
53	6204.13	- - 합성실유계의 것
54	6204.31	-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55	6204.32	- - 면제의 것
56	6204.33	- - 합성실유계의 것
57	6204.39	- -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58	6204.41	-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59	6204.42	- - 면제의 것
60	6204.43	- - 합성실유계의 것
61	6204.44	- - 재생 또는 반합성실유계의 것
62	6204.49	- -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63	6204.61	-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64	6204.62	- - 면제의 것
65	6204.63	- - 합성실유계의 것
66	6204.69	- -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67	6204.81	-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68	6204.82	- - 면제의 것
69	6204.83	- - 합성실유계의 것
70	6204.89	- -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71	6206.10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72	6206.20	- 면제의 것
73	6206.30	- 인조실유계의 것
74	6206.90	-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75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76	6206.30	- 면제의 것
77	6206.40	- 인조실유계의 것
78	6206.90	-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79	6207.21	면제의 것
80	6211.20	- 스키슈트
81	6211.41	- - 양모 또는 실수모계의 것
82	6211.42	- - 면제의 것
83	6211.43	- - 인조실유계의 것
84	6212.10	브레이크어
85	6212.20	겨울 및 캠퍼겨울
86	6212.90	- 기타
87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8	6213.20	면제의 것
89	6213.90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90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91	6214.20	양모계 및 실수모계의 것
92	6214.30	합성실유계의 것
93	6214.90	기타 방직용 실유계의 것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94	8218.00	장갑류
95	8424.90	부분품
96	9113.20	비금속제의 것(굽 또는 손의 도금역부를 불문한다)
97	9113.90	기타
98	9502.10	- 인형(옥을입힌것인지피여부를불문한다)
99	9503.41	- - 속이 채워져 있는것
100	9503.48	- - 기타

캄보디아

연번	HS 코드	품명
1	2823.90	- 기타
2	3907.10	- 아세탈수지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8, 겹-6.10 또는 -6.12
5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형의 것에 한한다)
6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90	- 카보이병·병·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3.90	- 기타
10	3928.90	- 기타
11	6107.11	- - 면제의 것
12	6107.12	- - 인조섬유제의 것
13	6107.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4	6107.91	- - 면제의 것
15	6107.92	- - 인조섬유제의 것
16	6107.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7	6108.21	- - 면제의 것
18	6108.22	- - 인조섬유제의 것
19	6108.2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6108.91	- - 면제의 것
21	6108.92	- - 인조섬유제의 것
22	6108.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3	6111.20	- 면제의 것
24	6114.20	- 면제의 것
25	6116.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6	6116.20	- 여자용의 건길이 또는 부를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퍼센트미만의 것)
27	6116.92	- - 면제의 것
28	6116.93	- - 합성섬유제의 것
29	6116.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간질라·넥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 넥타이류
32	6117.90	- 부분품
33	6201.11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34	6201.12	- - 면제의 것
35	6201.13	- - 인조섬유제의 것
36	6201.92	- - 면제의 것
37	6201.93	- - 인조섬유제의 것
38	6202.12	- - 면제의 것
39	6202.13	- - 인조섬유제의 것
40	6202.92	- - 면제의 것
41	6202.93	- - 인조섬유제의 것
42	6203.12	- - 합성섬유제의 것
43	6203.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44	6203.21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45	6203.31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46	6203.32	- - 면제의 것
47	6203.33	- - 합성섬유제의 것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48	8208.42	- - 면제의 것
49	8208.48	- - 합성섬유제의 것
50	8208.4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1	8204.11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52	8204.12	- - 면제의 것
53	8204.18	- - 합성섬유제의 것
54	8204.31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55	8204.52	- - 면제의 것
56	8204.55	- - 합성섬유제의 것
57	8204.5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8	8204.41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59	8204.42	- - 면제의 것
60	8204.48	- - 합성섬유제의 것
61	8204.44	-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2	8204.4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	8204.61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64	8207.21	- - 면제의 것
65	8212.10	- 브래지어
66	8212.20	- 거울 및 렌티클
67	8212.90	- 기타
68	8218.10	- 견 또는 견웨어스트의 것
69	8218.20	- 면제의 것
70	8401.10	- 보호용갑속 모델을 넣은 신발
71	8401.91	- - 무릎을 덮는 것
72	8401.92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73	8401.98	- - 기타
74	8402.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우보트부츠
75	8402.18	- - 기타
76	8402.20	- 신발(갑저판을 플렉시블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77	8402.80	- 기타 신발(보호용갑속 모델을 넣은 것에 한한다)
78	8402.91	- - 발목을 덮는 것
79	8402.99	- - 기타
80	8408.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우보트 부츠
81	8408.19	- - 기타
82	8408.20	- 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저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83	8408.30	- 신발류(메이슨 플레트톤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갑속 모델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84	8408.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갑속 모델을 넣은 것에 한한다)
85	8408.51	- - 발목을 덮는 것
86	8408.58	- - 기타
87	8408.91	- - 발목을 덮는 것
88	8408.99	- - 기타
89	8404.11	- - 스포츠용신발류 경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90	8404.18	- - 기타
91	8404.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합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92	8406.10	- 갑저가 가죽 또는 합포지션레더의 것
93	8406.20	- 갑저가 방직용 섬유제제의 것
94	8406.90	- 기타
95	8408.10	- 갑저와 그 부분중(보강재는 제외)
96	8408.20	- 바깥바닥 및 뒷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97	8408.91	- - 목제제의 것

부 록

98	6406.99	- - 기타 재료제의 것
99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100	8413.30	-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의가공 인정 상품 목록 >

인도네시아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기타
2	3907.10	아세탈수지
3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폴리아미드-6, -11, -12, -6.6, -6.8, 셀-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재용의 것에 한함)
6	4018.99	기타
7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공포지섬재더 또는 케이트트레더제의 것
8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9	4202.19	기타
10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공포지섬재더 또는 케이트트레더제의 것
11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섬브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2	4202.29	기타
13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공포지섬재더 또는 케이트트레더제의 것
14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섬브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5	4202.99	기타
16	4203.10	의류
17	4203.21	손등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18	6810.91	연제의 것
19	6810.92	인조섬유제의 것
20	6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재용(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질과 조인한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6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21	6802.91	연제의 것
22	6802.92	인조섬유제의 것
23	6802.93	연제의 것
24	6802.98	인조섬유제의 것
25	6802.99	연제의 토타렌 및 쿠바렌(테리타일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함)
26	6802.91	연제의 것
27	6802.98	인조섬유제의 것
28	6803.91	연제의 것
29	6803.92	합성섬유제의 것
30	8304.19	기타
31	8304.92	연제의 것(메리야스권을 또는 뜨개질 권들의 것은 제외한다)
32	7016.10	시탁고경용 안경유리
33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원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34	7117.11	커피향료 및 장식용향주
35	7418.99	기타
36	8207.30	프레싱·스텔링 또는 밀링용의 공구
37	8215.91	취급속으로 도출된 것
38	8215.99	기타
39	8418.90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함)
40	8421.21	-- 물의 여과 및 정정용의 것
41	8421.22	물 외의 용액의 여과 또는 정정용의 것
42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43	8421.29	기타
44	8421.9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45	8424.00	분분중

부 록

46	8478.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7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8	8504.81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의 것
49	8504.40	정지형 변류기
50	8504.90	부분품
51	8512.20	기타의 조영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52	8512.90	부분품
53	8518.90	전열용 저항체
54	8517.90	부분품
55	8529.90	기타
56	8534.00	인쇄회로
57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58	8539.50	기타의 개폐기
59	8536.60	플러그 소켓
60	8538.90	기타의 기기
61	8538.90	기타
62	8539.20	기타
63	8539.30	기타
64	8540.91	출력선관의 것
65	8543.80	기타
66	8544.41	절속자가 부착한 걸선
67	8544.70	당압축 케이블: [ITAL/A-099]
68	8714.99	기타
69	9018.90	기타의 기기
70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1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2	9101.19	기타
73	9101.21	자동권식의 것
74	9101.29	기타
75	9101.91	전기구동식의 것
76	9101.99	기타
77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8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9	9102.19	기타
80	9102.21	자동권식의 것
81	9102.29	기타
82	9102.91	전기구동식의 것
83	9102.99	기타
84	9111.10	귀환속제의 것 또는 귀환속을 일인 감속제의 케이스
85	9111.20	비환속제의 케이스(암 또는 온의 도판여부를 불문한다)
86	9111.80	기타의 케이스
87	9111.90	부분품
88	9112.20	케이스
89	9112.90	부분품
90	9113.10	귀환속제의 것 또는 귀환속을 일인 감속제의 것
91	9113.20	비환속제의 것(암 또는 온의 도판여부를 불문한다)
92	9113.90	기타
93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4	9114.20	시계용 보석
95	9114.30	문자판
96	9114.40	지판과 보리지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97	8114.80	기타
98	8404.80	기타
99	8502.91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100	8508.49	기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	3907.10	- 아세탈수지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아미드 -8, -11, -12, -6,6, -6,6, 합-6,10 또는 -6,12
5	3910.00	살리코수지(일차계통의 것에 한한다)
6	4016.99	-- 기타
7	4202.11	- - 외부표면이 가죽·공포지섬재나 또는 케이틴트레더제의 것
8	4202.1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제의 것
9	4202.19	- - 기타
10	4202.21	- - 외부 표면이 가죽·공포지섬재나 또는 케이틴트레더제의 것
11	4202.22	-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섬재 또는 방직용 섬유재제의 것
12	4202.29	- - 기타
13	4202.91	- - 외부표면이 가죽·공포지섬재나 또는 케이틴트레더제의 것
14	4202.9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섬재 또는 방직용 섬유재제의 것
15	4202.99	- - 기타
16	4203.10	- 의류
17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18	6115.19	- - 기타 방직용 섬유재제의 것
19	6115.20	- 여자용의 전길이나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87메시텍스미만의 것)
20	6115.92	- - 면제의 것
21	6115.93	- - 합성섬유재제의 것
22	6115.99	- - 기타 방직용 섬유재제의 것
23	6211.20	- 스키슈트
24	6402.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부츠 및 스노우보드부츠
25	6403.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부츠 및 스노우보드 부츠
26	7018.10	- 식탁포장을 안경유리
27	7113.11	- - 총제의 것(기타의 귀환속을 포함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	7113.19	- - 기타 귀환속제의 것(귀환속을 포함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	7113.20	- 귀환속을 입힌 비귀환속제의 것
30	7116.10	- 천연 또는 합성진주제의 것
31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32	7117.11	- - 커트팅크 및 장식용단주
33	7117.19	- - 기타
34	7117.90	- 기타
35	7815.20	- 스키트 체인
36	7419.99	- - 기타
37	8207.30	- 프레스·스탬핑 또는 권징용의 공구
38	8215.91	- - 귀환속으로 도장된 것
39	8215.99	- - 기타
40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질과구·부과구 및 이와 유사한 부품
41	8415.30	-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42	8421.21	- - 물의 여과 및 정정용의 것
43	8421.22	- - 물 이외의 용액의 여과 또는 정정용의 것
44	8421.23	-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의가공 인정 상품 목록 >

45	8421.29	- - 기타
46	8421.31	- - 내열기관용의 공기역자기
47	8473.10	- 제848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8	8480.71	-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9	8504.31	-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의 것
50	8504.40	- 정지형 변환기
51	8504.80	- 부분품
52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53	8512.80	- 부분품
54	8518.80	- 전열용 저항체
55	8534.00	인쇄회로
56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57	8536.50	- 기타의 개폐기
58	8536.69	- - 플러그와 소켓
59	8536.80	- 기타의 기기
60	8538.90	- 기타
61	8539.29	- - 기타
62	8539.39	- - 기타
63	8540.81	- - 유극선권의 것
64	8543.89	- - 기타
65	8544.41	- - 절속자가 부착한 전선
66	8544.70	- 광섬유 케이블
67	9013.80	- 기타의 기기
68	9101.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69	9101.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0	9101.19	- - 기타
71	9101.21	- - 자동원식의 것
72	9101.29	- - 기타
73	9101.91	- - 전기구동식의 것
74	9101.99	- - 기타
75	9102.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6	9102.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7	9102.19	- - 기타
78	9102.21	- - 자동원식의 것
79	9102.29	- - 기타
80	9102.91	- - 전기구동식의 것
81	9102.99	- - 기타
82	9111.10	- 귀환속제의 것 또는 귀환속을 입힌 암속제의 케이스
83	9111.20	- 비환속제의 케이스(암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4	9111.80	- 기타의 케이스
85	9111.90	- 부분품
86	9112.20	- 케이스
87	9112.90	- 부분품
88	9113.10	- 귀환속제의 것 또는 귀환속을 입힌 암속제의 것
89	9113.20	- 비환속제의 것(암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0	9113.90	- 기타
91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2	9114.20	- 시계용 보석
93	9114.30	- 문자판
94	9114.40	- 지판과 브리지
95	9114.90	- 기타

부 록

96	9502.10	- 인형(목을입힌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97	9502.91	- -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98	9503.41	- - 속이 채워져 있는 것
99	9503.49	- - 기타
100	9503.90	- 기타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의가공 인정 상품 목록 >

말레이시아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기타
2	392330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의 카보이병·병·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플라스틱의 것에 한한다)
3	392690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제의 재봉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재봉
4	4016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가동할 고무의 기타 제형(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6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합포지섬재나 또는 케이틴트레더제의 것
8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합성용 섬유제의 것
7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합포지섬재나 또는 케이틴트레더제의 것
8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류 또는 합성용 섬유제의 것
9	420229	외부표면이 멜러나이트피이버·합지 또는 이러한 재료·복합 지보 전부 또는 주로 직복하의 한의 핸드백(벨벳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10	420292	기타
11	420321	여행용 팔복가드
12	551092	합직용 직물을 기재로 한 인조섬유제의 자수로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도 된 것에 한하여, 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는 제외한다)
13	610899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내갈리제·복용용카운트레싱카운트 하우스코트 및 유사한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여, 면제의 것 내지 인조섬유제·조끼·슬립·제리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과자마·브래지어·거울·팔찌 및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14	611599	등신 또는 무릎까지 오는 스카킹 및 기타 양털류(합직용 섬유제의 정액류 치프용의 스카킹과 바다는 제외) 아닌 신발류를 포함하여,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면제 또는 합성섬유제의 것, 캔티호스·타이크 및 구성하는 단사가87텍스미반의 등신 또는 무릎까지 오는 여성용 스카킹 및 유아용 메리야스는 제외한다)
15	611710	소용·스카프·머플러·만틸라·데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6	611720	넥타이류
17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18	620192	면제의 것
19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20	620212	면제의 것
21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22	620292	면제의 것
23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24	620319	남자 또는 소년용의 합직용 섬유제의 슈트(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내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여부를 불문한 인조섬유제의 것, 트렉스부트, 스키슈트, 수영복을 제외한다)
25	620499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벳이 있는바지·슬리퍼 바지 및

부 록

		얇은 바지(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실수모제, 면제의 것 내지 레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여부를 불문한 인조섬유의 것, 벨리 및 수영복을 제외한다)
26	620590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셔츠(양모 또는 실수모제, 면제의 것 내지 레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여부를 불문한 인조섬유제의 것, 나이트셔츠·싱글리프트 및 기타조끼는 제외한다)
27	621142	기도할복
28	621143	기도할복
29	621290	기타
30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31	621320	면제의 것
32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3	621410	기도 스카프
34	621420	양모제 및 실수모제의 것
35	621430	기도 스카프
36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7	6216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8	630392	커튼(트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벨란스(합성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레리야스 편물 내지 뜨개질 편물의 것, 일타 및 와양은 제외한다)
39	640219	바깥 바닥 및 깔개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포츠용 신발류(제6401호의 방수 신발류·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우보트부츠 및 아이스 내지 모올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제외한다)
40	640220	바깥 바닥 및 깔개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깔개편을 폴리살일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완구용 신발류는 제외한다)
41	640230	보호용 암속 토끼를 넣은 신발(바깥 바닥 및 깔개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6401호의 방수용 신발류, 스포츠용 신발류 및 정형외과용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42	640291	발목을 덮는 신발류(바깥 바닥 및 깔개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보호용 암속 토끼를 넣은 신발류, 제6401호의 방수용 신발류, 스포츠용 신발류, 정형외과용의 신발류 및 완구용 신발류는 제외한다)
43	640319	기타
44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깔개를 발광과 현지발가라의 무늬를 갈아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5	640330	가죽 깔개의 신발류(레이스나 플레트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암속 토끼를 넣은 것은 제외한다)
46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7	640359	기타 신발류
48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9	640411	스포츠용신발류(경주화·농구화·제조화·군현화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및 깔개를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것에 한한다)
50	640510	깔개가 가죽 또는 폼피션레더의 것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61	840520	갑자가 방직용 섬유재로의 것
62	840580	기타
63	840899	공간 내지 압향
64	701510	시력조정용 안경유리
65	7419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동계장
66	821591	스폰-포크-국자-스칼머-제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밀감칼집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귀금속으로 도장된 비합금제의 것에 한하며, 바다가게 커터 및 가압용 가위와 같은 물종의 세트는 제외한다)
67	850230	기타
68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69	842480	부분품
60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1	848071	사슴식 또는 압축식의 것
62	850480	부분품
63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4	851290	부분품
65	851790	부분품
66	852890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방송용, 텔레비전용 송수신기기, 텔레비전카메라, 경지화상비데오키메라 및 기타 비데오키메라레코더, 레이더기기, 무선항해보조기기 또는 무선원격제어기기 및 기타 비데오키메라레코더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67	853400	인쇄재료
68	853830	기타
69	853850	전동기용의 스타터
70	853929	전기 릴라엔트 램프(램프 전력 200와트 이하 ·100볼트 초과의 램스엔 램프인 램프 및 자외선램프 내지 적외선 램프는 제외한다)
71	853939	방전램프(형광, 일 음극형 램프·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메탈 할라이드 램프 및 자외선 램프는 제외한다)
72	854091	음극선관의 것
73	854339	기타
74	854441	(80볼트이하의 것에 한하며, 절연한 것, 절속자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75	8708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트랙터용, 10인 이상 수용용의 자동차용, 주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 자동차 및 기타 차량용, 상품 운송용 자동차 및 특수 목적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76	871499	(특히 기재하지 않는 한) 자전거용 부분품과 부속품
77	901350	기타의 기기
78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9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80	910119	기타
81	910121	자동권식의 것
82	910129	기타
83	910191	전기구동식의 것

부 록

84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5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6	910221	자동권식의 것
87	910291	건기구동식의 것
88	910299	기타
89	911110	귀함속계의 것 또는 귀함속을 입힌 함속계의 케이스
90	911120	비함속계의 케이스(함 또는 손의 도함여부를 불문한다)
91	911180	기타의 케이스
92	911190	부분품
93	911290	부분품
94	911310	귀감속계의 것 또는 귀감속을 입힌 감속계의 것
95	911320	비감속계의 것(감 또는 손의 도감여부를 불문한다)
96	911410	스프링(웨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7	911420	시계용 보석
98	911430	문자판
99	911440	지판과 보리지
100	940490	침구이를 제동(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제표를 승진하거나 내부에 걸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에 한하여, 매트리스 시트, 매트리스, 슬리핑 팩, 용기 또는 용 매트리스 및 피개, 모포 및 커버를 제외한다)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미얀마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	3907.10	- 아세탈수지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머이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과계통의 것에 한한다)
6	3923.10	- 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30	-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50	-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3.90	- 기타
10	3928.90	- 기타
11	4202.1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2	4202.19	- - 기타
13	4202.21	- - 외부 표면이 가죽, 공조지섬재더 또는 게이트섬재더의 것
14	4202.22	-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16	4202.29	- - 기타
16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17	6211.20	- 스키슈트
18	6216.00	장갑류
19	6401.10	- 보호용갑속 토막을 넣은 신발
20	6401.91	- - 무릎을 덮는 것
21	6401.92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22	6401.99	- - 기타
23	6402.12	- - 스키부츠,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트부츠
24	6402.19	- - 기타
25	6402.20	- 신발(갑피갑을 플렉시블식으로 바닥에 조인한 것)
26	6402.30	- 기타 신발(보호용갑속 토막을 넣은 것에 한한다)
27	6402.91	- - 발목을 덮는 것
28	6402.99	- - 기타
29	6403.12	- - 스키부츠,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트 부츠
30	6403.20	- 신발류(바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구위를 잡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31	6403.30	- 신발류(레이스나 플랫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갑속 토막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32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갑속 토막을 넣은 것에 한한다)
33	6403.51	- - 발목을 덮는 것
34	6403.59	- - 기타
35	6403.91	- - 발목을 덮는 것
36	6403.99	- - 기타
37	6404.20	- 신발류(바닥바닥을 가죽 또는 공조지섬 재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38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공조지섬재더의 것
39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40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41	6406.20	- 바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42	6406.91	- - 목재제의 것
43	6814.90	- 기타
44	7016.10	- 시트코팅용 안경유리
45	8207.30	- 프레스, 스텝핑 또는 편경용의 공구
46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질착구, 부속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부 록

47	8413.80	- 연프·콘탈용금속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거스른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포함한다)
48	8421.21	- - 물의 여과 및 정정용의 것
49	8421.22	- - 물 외의 액체의 여과 또는 정정용의 것
50	8421.28	- - 내연기관용 추돌여과기
51	8421.29	- - 기타
52	8421.31	-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53	8424.90	- 부분품
54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5	8480.71	-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56	8504.31	-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의 것
57	8504.40	- 절기형 변압기
58	8504.90	- 부분품
59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0	8512.90	- 부분품
61	8516.80	- 전열용 저항체
62	8584.00	인쇄회로 [ITAI/A-072]
63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64	8536.80	- 기타의 개폐기
65	8536.69	- - 플러그와 소켓
66	8536.90	- 기타의 기기
67	8538.90	- 기타
68	8539.29	- - 기타
69	8539.39	- - 기타
70	8708.99	- - 기타
71	8714.99	- - 기타
72	9013.80	- 기타의 기기
73	9101.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4	9101.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5	9101.19	- - 기타
76	9101.21	- - 자동원식의 것
77	9101.29	- - 기타
78	9101.91	- - 전기구동식의 것
79	9101.99	- - 기타
80	9102.11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1	9102.12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2	9102.19	- - 기타
83	9102.21	- - 자동원식의 것
84	9102.29	- - 기타
85	9102.91	- - 전기구동식의 것
86	9102.99	- - 기타
87	9111.10	- 귀환속계의 것 또는 귀환속을 입힌 함속계의 케이스
88	9111.20	- 2. 비귀환속계의 케이스(갑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9	9111.80	- 기타의 케이스
90	9111.90	- 부분품
91	9112.20	- 케이스
92	9112.90	- 부분품
93	9113.10	- 귀환속계의 것 또는 귀환속을 입힌 함속계의 케이스
94	9113.20	- 2. 비귀환속계의 케이스(갑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5	9113.90	- 기타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96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7	9114.20	- 시계용 보석
98	9114.30	- 분자관
99	9114.40	- 지갑과 브리지
100	9114.90	- 기타

필리핀

연번	HS 코드	품명
1	2829.90	기타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4202.11	외투표면이 가죽·합포지선재더 또는 제이컨트레더제의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제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3	4203.10	- 의류
4	6107.11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
5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
6	6107.91	면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나이트셔츠·과자마·목욕용가운·드레싱자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데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7	6107.92	인조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나이트셔츠·과자마·목욕용가운·드레싱자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데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8	6108.21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9	6108.22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0	6108.91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과자마·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자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데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1	6108.92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과자마·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자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데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2	6108.99	과자마·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자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데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3	6111.20	면제의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데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4	6114.20	면제의 기타 의류(데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5	6117.10	소용·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6	6201.11	양모 또는 실수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제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7	6201.1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제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8	6201.13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제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9	6201.9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웬트치터·웬트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0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웬트치터·웬트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1	6202.12	면제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제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2	6202.13	인조섬유제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제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3	6202.9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웬트치터·웬트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4	6202.93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웬트치터·웬트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5	6203.12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의가공 인정 상품 목록 >

26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27	6203.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28	6203.3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29	6203.33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30	6203.4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방이 있는 바지·송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1	6203.43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방이 있는 바지·송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2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방이 있는 바지·송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3	6204.1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34	6204.1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35	6204.1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36	6204.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37	6204.3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38	6204.3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39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블레이저
40	6204.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1	6204.4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2	6204.4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3	6204.44	견질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4	6204.49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45	6204.5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치마바지
46	6204.5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치마바지
47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치마바지
48	6204.6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방이 있는 바지·송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49	6204.6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방이 있는 바지·송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50	6204.6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방이 있는 바지·송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51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방이 있는 바지·송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52	6205.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53	6205.30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54	6205.8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55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56	6206.30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57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58	6207.21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 및 파카마
59	6211.20	스키슈트
60	6211.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1	6211.4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2	6211.43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3	6212.20	거울 및 렌즈거울
64	6213.20	면제의 손수건
65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6	6214.20	양모제 및 섬유모제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7	6214.30	합성섬유제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8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부 록

69	6902.5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70	6902.5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71	6902.58	인조섬유제의 기타 베드린넨
72	6908.91	면제의 거문(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거문 또는 걸레용 벨탈스(데리아스편을 또는 뜨개질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73	6904.92	면제의 (데리아스편을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기타
74	6402.12	실내용품(제8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스노우보트부츠 (마갈라다과 갈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76	6405.12	스키부츠·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트 부츠 (마갈라다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폼모질성 레더로 만들고 갈피를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것에 한한다)
76	6405.20	갈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기타 신발류
77	6406.91	목재제의 기타 신발류 부분품
78	7015.10	시계모형을 양경유리
79	7113.11	은제(기타의 귀합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합속제 또는 귀합속을 입힌 합속제의 것에 한한다)
80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계의 계층
81	7116.20	귀의 또는 반귀의(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계의 계층
82	7117.11	비합속제(귀합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커프링 및 장식용단추
83	7315.20	스키드 체인
84	8207.30	프레싱·스텔링 또는 편직용의 공구
85	8421.22	물 피의 송프의 여과 또는 정정용의 기계
86	8421.29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와 정정기
87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8	9013.90	기타의 기기
89	9101.91	전기구동식의 기타 시계(케이스가 귀합속제의 것 또는 귀합속을 입힌 합속제의 것에 한한다)
90	9111.10	귀합속제의 것 또는 귀합속을 입힌 합속제의 시계 케이스
91	9111.20	비합속제의 시계 케이스(함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2	9111.80	기타 시계 케이스
93	9111.90	시계 케이스의 부분품
94	9112.20	완류케이스 및 이 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
95	9112.90	이 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
96	9113.10	귀합속제의 것 또는 귀합속을 입힌 합속제의 후면을 시계의 음·레노·침과 이들의 부분품
97	9113.20	귀합속제의 것 또는 비합속제의 귀합속을 입힌 합속제(함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의 후면을 시계의 음·레노·침과 이들의 부분품
98	9114.10	스트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9	9114.20	시계용 보석
100	9114.40	지판과 브리지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싱가포르

연번	HS 코드	품명
1	4202.19	기타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제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2	4203.10	가죽제 또는 공조지성레더제의 의류
3	4203.21	가죽제 또는 공조지성레더제의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앞잡류
4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라노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단과 조립한 칸 줄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5	6107.12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
6	6107.91	면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나이브셔츠·과자마·목욕용자운·드레싱자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7	6107.92	인조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나이브셔츠·과자마·목욕용자운·드레싱자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8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웨어·브리프·나이브셔츠·과자마·목욕용자운·드레싱자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9	6108.21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0	6108.22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1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프·팬티
12	6108.91	면제·제리코트·브리프·팬티·나이브드레스·과자마·네그리제·목욕용자운·드레싱자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3	6108.92	인조섬유제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제리코트·브리프·팬티·나이브드레스·과자마·네그리제·목욕용자운·드레싱자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4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제리코트·브리프·팬티·나이브드레스·과자마·네그리제·목욕용자운·드레싱자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5	6116.20	여자용의 끈길이나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멍하는 단사가 67메시리스미란의 것)
16	6115.98	합성섬유제의 기타 팬티호스·타이크·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다를 다치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7	6117.20	넥타이류
18	6201.1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재인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9	6201.1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재인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0	6201.13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재인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1	6201.92	면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22	6201.93	인조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부 록

23	8202.1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4	8202.18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 및 이와 유사한 의류
25	8202.92	면제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트지퍼·윈트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8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26	8202.98	인조섬유의 기타 여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블록·아노라(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트지퍼·윈트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8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27	8203.2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28	8203.8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29	8203.82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30	8203.53	합성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31	8203.48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벨벳이 있는 바지·슈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염복을 제외한다)
32	8204.18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33	8204.33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자켓·블레이저
34	8204.44	개성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드레스
35	8204.58	합성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스커트·피마바지
36	8204.8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가슴받이와 벨벳이 있는 바지·슈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37	8205.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38	8205.30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39	8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40	8207.21	면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 및 파카라
41	8211.20	스키슈트
42	8211.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43	8211.42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44	8211.48	인조섬유제의 여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45	8212.10	브래지어
46	8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손수건
47	8213.20	면제의 손수건
48	8213.8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손수건
49	8214.20	양모제 및 섬유모제의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0	8302.3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51	8302.52	인조섬유제의 기타 베드린넨
52	8302.61	면제의 기타 테이블 린넨
53	8302.68	인조섬유제의 기타 테이블 린넨
54	8302.91	면제의 기타 베드린넨, 테이블 린넨, 도일렛린넨 및 쿠방린넨
55	8303.92	합성섬유제의 기타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트 및 커튼 또는 실내용 벨란스
56	8304.19	기타 침대덮개
57	8304.92	면제(에리아스린을 또는 프제일 린넨의 것은 제외한다)의 기타 실내용품(제8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58	8401.10	보호용관속·도열을 넣은 신발류(바깥바닥과 깔개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깔개를 바닥에 스티칭·리벳팅·네일링·스투루잉·클러킹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일한 것을 제외한다)
59	8401.91	무튼을 달는 기타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깔개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다에 스티칭·리퍼팅·네일링·스투투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0	8401.92	발목을 덮는 (부츠를 덮는 것은 제외한다) 기타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다에 스티칭·리퍼팅·네일링·스투투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1	8401.99	기타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다에 스티칭·리퍼팅·네일링·스투투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2	8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부츠 및 스노우보트부츠
63	8402.20	신발(갑피관을 플러싱업식으로 바다에 조립한 것)
64	8402.30	기타 신발(보호용함속 포함을 넣은 것에 한한다)
65	8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헐기발가락의 구멍을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6	8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랫폼 나무로 된 것에 한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함속 포함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67	8403.91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류
68	8404.19	기타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9	8405.20	갑피가 방피를 함유재료의 기타 신발류
70	8408.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71	8409.91	목재제의 기타 신발류 부분품
72	7015.10	시혁교정용 안경유리
73	7119.11	온제(기타의 귀갑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신변장식용품
74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계의 제품
75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제품
76	7117.11	커퍼링크 및 장식용단추 모조
77	7815.20	스키드 체인
78	8215.91	귀갑속으로 도합된 기타 스톤·프록·목자·스립머·케이프러·생선용 갈·머리용 갈·설향질계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79	8421.22	물 위의 승표의 여과 또는 정정용의 액체용의 여과기와 정정기
80	8714.9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방의 것에 한한다)
81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팔목시계(케이스가 귀갑속제의 것 또는 귀갑속을 입힌 갑속제의 것에 한한다. 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2	9101.29	자동권식의 것이 아닌 기타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케이스가 귀갑속제의 것 또는 귀갑속을 입힌 갑속제의 것에 한한다)
83	9101.91	전기구동식의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갑속제의 것 또는 귀갑속을 입힌 갑속제의 것에 한한다)
84	9101.99	전기구동식이 아닌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갑속제의 것 또는 귀갑속을 입힌 갑속제의 것에 한한다)
85	9102.21	자동권식의 기타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86	9102.91	전기구동식의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지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87	9102.99	전기구동식의 것이 아닌 기타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부 록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88	9111.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시계 케이스
89	9111.20	비금속제의 시계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90	9111.80	기타 시계 케이스
91	9111.90	시계 케이스의 부분품
92	9112.20	완득케이스
93	9112.90	완득케이스의 부분품
94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휴대용 시계의 글-랜드-칼리와 이들의 부분품
95	9113.20	비금속제(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의 휴대용 시계의 글-랜드-칼리와 이들의 부분품
96	9114.10	완득 또는 시계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7	9114.20	완득 또는 시계 시계용 보석
98	9114.30	완득 또는 시계 문자판
99	9114.40	완득 또는 시계 지판과 브리지
100	9502.91	사람모형의 인형의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의가공 인정 상품 목록 >

베트남

연번	HS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	420212	- - 피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합성섬유로 된 것
3	420219	- - 기타
4	420291	- - 피부표면이 가죽·공포지섬유 또는 레이온섬유로 된 것
5	420292	- - 피부표면이 플라스틱·피혁 또는 합성섬유로 된 것
6	420299	- - 기타
7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된 것
8	610719	- - 기타 합성섬유로 된 것
9	610799	- - 양모 또는 실수모직의 것
10	610899	- - 기타 합성섬유로 된 것
11	611720	- 넥타이류
12	620321	- - 양모 또는 실수모직의 것
13	620610	- 양모 또는 실수모직의 것
14	621120	- 스키슈트
15	621141	- - 양모 또는 실수모직의 것
16	621142	- - 면직의 것
17	621210	- 브래지어
18	621220	- 거울 및 렌즈거울
19	621290	- 기타
20	621310	- 기타:
21	621320	- 면직의 것
22	621390	- 기타 합성섬유로 된 것
23	621410	- 견 또는 견직이스트의 것
24	621420	- 양모직 및 실수모직의 것
25	621490	- 합성섬유로 된 것
26	621490	- 기타 합성섬유로 된 것
27	630251	- - 면직의 것
28	630253	- - 인조섬유로 된 것
29	630291	- - 면직의 것
30	630293	- - 인조섬유로 된 것
31	630391	- - 면직의 것
32	630392	- - 합성섬유로 된 것
33	630419	- - 기타
34	630492	- - 면직의 것(메리야스런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35	640110	- 보호용합속 토끼발을 넣은 신발
36	640191	- - 무릎을 덮는 것
37	640192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38	640199	- - 기타
39	6402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부츠 및 스노우보드부츠
40	640219	- - 기타
41	640230	- 기타 신발(보호용합속 토끼발을 넣은 것에 한한다)
42	640291	- - 발목을 덮는 것
43	640299	- - 기타
44	6403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부츠 및 스노우보드 부츠
45	640319	- - 기타
46	640330	- 신발류(메이슨나 플레트폼 나무로 된 것의 편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합속 토끼발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47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합속 토끼발을 넣은 것에 한한다)

부 록

45	640351	- - 발목을 덮는 것
49	640359	- - 기타
50	640391	- - 발목을 덮는 것
51	640399	- - 기타
52	640411	- - 스포츠용신발류 경구화·농구화·체조화·운동화 및 이와 유사한 것
53	640419	- - 기타
54	640420	- 신발류(파말바닥을 가죽 또는 합조지섬 재대로 만든 것의 편편다)
55	640610	= 깔개가 가죽 또는 합조지섬재의 것
56	640620	= 깔개가 합조지섬 재의 것
57	640590	- 기타
58	640610	= 깔개와 그 부분품(보장되는 제외)
59	640620	= 파말바닥 및 헛바닥(고무 또는 플라스틱재의 편편다)
60	640691	- - 목재재의 것
61	640699	- - 기타 재의 것
62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63	711811	= - - 손계의 것(기타의 귀갑속을 포함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4	711819	= - - 기타 귀갑속계의 것(귀갑속을 포함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711820	= 귀갑속을 입힌 비갑속계의 것
66	711810	= 천연 또는 합성진주계의 것
67	711820	= 귀걸이 또는 반귀걸이(천연·합성 또는 재성의 것)계의 것
68	711711	= - - 커프팅 및 장식용단추
69	711719	- - 기타
70	711790	= 기타
71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2	901350	= 기타의 기기
73	910112	= - - 장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4	910119	- - 기타
75	910121	= - - 자동권식의 것
76	910129	- - 기타
77	910199	- - 기타
78	910211	=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9	910212	= - - 장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0	910291	= - - 전기구동식의 것
81	910299	- - 기타
82	911110	= 귀갑속계의 것 또는 귀갑속을 입힌 갑속계의 케이스
83	911120	= 비갑속계의 케이스(갑 또는 손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4	911180	= 기타의 케이스
85	911190	= 부분품
86	911290	= 부분품
87	911310	= 귀갑속계의 것 또는 귀갑속을 입힌 갑속계의 것
88	911320	= 비갑속계의 것(갑 또는 손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9	911390	= 기타
90	911410	= 스포팅(웨어스스포츠를 포함한다)
91	911420	= 시계용 보석
92	911430	= 분자간
93	911440	= 지갑과 보리지
94	911490	= 기타
95	940490	= 기타
96	950210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7	950291	= - -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 부록 2 :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98	960841	- - 속이 채워져 있는 것
99	960849	- - 기타
100	960890	- 기타

브루나이 다루살람

연번	HS 코드	품명
1	4016.99	- - 기타
2	4202.11	- - 외부표면이 가죽·실크소재제 또는 케이민트레더제의 것
3	4202.1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4	4202.19	- - 기타
5	4202.21	- - 외부 표면이 가죽·실크소재제 또는 케이민트레더제의 것
6	4202.22	-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제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7	4202.91	- - 외부표면이 가죽·실크소재제 또는 케이민트레더제의 것
8	4202.92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제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9	4202.99	- - 기타
10	6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파노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케팅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6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11	6107.11	면제의 것
12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13	6107.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4	6107.81	- - 면제의 것
15	6107.92	- - 인조섬유제의 것
16	6107.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7	6108.21	- - 면제의 것
18	6108.22	- - 인조섬유제의 것
19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0	6108.91	- - 면제의 것
21	6108.92	- - 인조섬유제의 것
22	6108.99	- -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3	6109.10	- 면제의 것
24	6111.20	- 면제의 것
25	6116.19	- -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26	6116.20	- 여자용의 끈길이나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제시텍스미만의 것
27	6116.92	- - 면제의 것
28	6116.93	- - 합성섬유제의 것
29	6116.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6117.10	- 스웨트-셔츠·머플러·담뱃타-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 넥타이류
32	6117.90	- 부분품
33	6201.1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34	6201.12	면제의 것
35	6201.13	- - 인조섬유제의 것
36	6201.92	- - 면제의 것
37	6201.93	- - 인조섬유제의 것
38	6202.12	- - 면제의 것
39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40	6202.92	- - 면제의 것
41	6202.93	- - 인조섬유제의 것
42	6203.12	- - 합성섬유제의 것
43	6203.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부록 3 : 미국-싱가폴 FTA 상의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품목 >

(1) 3818 Chemical element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in the form of discs, wafers or similar forms; chemical compound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2) 7017.10.30, 7020.00.30 Quartz reactor tubes and holders designed for insertion into diffusion and oxidation furnaces for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3) 8421.19.30 Spin dryers for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4) 8421.91.60 Parts of spin dryers for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5) 8424.30.90, 8424.89.50, 8465.99.40, 8479.89.84 Deflash machines for cleaning and removing contaminants from the metal leads of semiconductor packages prior to the electroplating process

(6) 8424.89.30 Spraying appliances for etch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7) 8424.89.30, 8464.90.10, 8464.90.60, 8479.89.84, 8424.89.50, 8479.89.87 Apparatus for wet-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

(8) 8424.90.90, 8466.91.10, 8466.91.50, 8479.90.94, 8466.20.40, 8466.30.45 Parts of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

(9) 8424.90.90 Parts of spraying appliances for etch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10) 8428.39.00, 8428.90.00, 8428.20.00, 8428.33.00 Automated machines for transport, handling and storage of semiconductor wafers, wafer cassettes, wafer boxes and other material for semiconductor devices

부 록

(11) 8431.39.00 Parts of automated machines for transporting, handling and storing semiconductor wafers, wafer cassettes, wafer boxes and other material for semiconductor devices

(12) 8456.10.60 Lasercutters for cutting contacting tracks in semiconductor production by laser beam; machine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beam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13) 8456.91 Machines for dry-etching patterns on semiconductor materials

(14) 8456.99.10 Focused ion beam milling machines to produce or repair masks and reticles for patterns on semiconductor devices

(15) 8456.99.70 Apparatus for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16) 8462.21.40, 8462.29.40 Machines for bending, folding and straightening semiconductor leads

(17) 8464.10.00 Machines for sawing monocrystal semiconductor boules into slices, or wafers into chips

(18) 8464.10.00, 8464.90.10 Dicing machines for scribing or scoring semiconductor wafers

(19) 8464.20.10 Grinding, polishing and lapping machines for processing of semiconductor wafers

(20) 8466.91.10, 8466.91.50, 8466.10.40, 8466.20.40, 8466.30.45 Parts for machines for sawing monocrystal semiconductor boules into slices, or wafers into chips; parts of dicing machines for scribing or scoring semiconductor wafers; parts of grinding, polishing and lapping machines for processing of semiconductor wafers

(21) 8466.93.15, 8466.93.47, 8466.93.60, 8466.93.85, 8466.10.40, 8466.20.40, 8466.30.45 Parts of focused ion beam milling machines for producing or repairing masks and reticles for patterns on semiconductor

devices; parts of lasercutters for cutting contacting tracks in semiconductor production by laser beam; parts of machine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22) 8466.93.15, 8466.93.47, 8466.93.60, 8466.93.85, 8466.20.40, 8466.30.45
Parts of machines for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parts of machines for dry etching patterns on semiconductor wafers

(23) 8466.94.20, 8466.94.40, 8466.94.55, 8466.94.75, 8466.10.40, 8466.20.40, 8466.30.45
Parts of machines for bending, folding and straightening semiconductor leads

(24) 8469.11 Word processing machines

(25) 8470 Calculating machines and pocket-size data recording, reproducing and displaying machines with calculating functions; accounting machines, postage-franking machines, ticket-issuing machines and similar machines, incorporating a calculating device; cash registers

(26) 8471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capable of (1) storing the processing program or programs and at least the data immediately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gram or programs, (2) being freely programm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user, (3) performing arithmetical computations specified by the user and (4) executing, without human intervention, a processing program which requires them to modify their execution, by logical decision during the processing run; the foregoing whether or not able to receive and process with the assistance of central processing unit telephony signals, television signals or other analogue or digitally processed audio or video signals, but not including machines performing a specific function other than data processing, or incorporating or working in conjunction with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and not otherwise specified in this

부 록

subdivision of this note

(27) 8471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magnetic or optical readers,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8) 8471.49.50, 8471.70.60, 8471.70.90 Optical disc storage unit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including CD drives and DVD drives), whether or not having the capability of writing/recording as well as reading, whether or not in their own housings

(29) 8471.50.00, 8473.30.10, 8473.50.30, 8473.10.20, 8473.21.00, 8473.29.00, 8473.40.10, 8504.40.60, 8504.40.85, 8504.90.20, 8504.90.65, 8517.50.10, 8517.90.08, 8517.90.36, 8517.90.38, 8517.90.44, 8518.90.20, 8518.90.60, 8520.20.00, 8522.90.45, 8529.90.22, 8531.90.15, 8538.90.10, 8543.90.64, 9009.99.40, 9009.99.80, 9013.90.50, 9017.90.00, 9026.90.20, 9026.90.60, 9027.90.45, 9027.90.54, 9027.90.64, 9027.90.84, 9030.90.64, 9030.90.84, 9031.90.54, 9031.90.70 Printed circuit assemblies for goods falling within this subdivision of this note, the foregoing including such assemblies for external connections such as cards that conform to the 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PCMCIA) standard and consisting of one or more printed circuits of heading 8534 with one or more active elements assembled thereon, with or without passive elements; such active elements to include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whether or not photosensitive, of heading 8541 and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 assemblies of heading 8542

(30) 8471.60.10, 8471.60.35, 8471.60.45, 8471.49.15, 8471.49.26, 8471.49.29 Display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the foregoing with a cathode ray tube with a dot screen pitch smaller than 0.4 mm, not capable of receiving and processing television signals or other analogue or digitally

processed audio or video signals without assistance of a central processing unit of a “computer” as defined in the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31) 8471.60.10, 8471.60.30, 8471.60.45, 8471.49.24, 8471.49.15, 8471.49.29, 8473.30.10, 8473.30.20, 8473.30.50, 8531.20.00, 8531.90.15, 8531.90.75, 8543.89.92, 8543.90.64, 8543.90.84, 9013.80.70, 9013.90.50 Flat panel displays (including LCD, 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 for product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subdivision of this note

(32) 8471.60.51 through 8471.60.67, inclusive; 8471.49.31 through 8471.49.37, inclusive; 9017.10.40, 9017.20.70, 9017.90.00 Plotters, the foregoing whether input or output units of heading 8471 or drawing or drafting machines of heading 9017

(33) 8471.70, 8471.49.50, 8523.20.00, 8523.90.00, 8524.31.00, 8524.39.40, 8524.91.00, 8524.99.40 Proprietary format storage devices, including media therefor,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the foregoing with or without removable media and whether magnetic, optical or other technology, including cartridge storage units

(34) 8471.80.10, 8471.80.40, 8471.80.90, 8471.49.60, 8517.50.60, 8517.50.90 Local area network (LAN) and wide area network (WAN) apparatus, including products dedicated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to permit the interconnection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for a network that is used primarily for the sharing of resources such as central processor units, data storage devices and input and output units, and including the adapters, hubs, in-line repeaters, converters, concentrators, bridges and routers and printed circuit assemblies for physical incorporation into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35) 8472.90.10 Automatic teller machines

부 록

(36) 8473.21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s of subheadings 8470.10, 8470.21 and 8470.29

(37) 8473.29 Parts and accessories of other machines of heading 8470

(38) 8473.3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1

(39) 8473.50 Parts and accessories equally suitable for use with machines of two or more of the headings 8469 to 8472

(40) 8477.10.70, 8477.40.40, 8477.59.40 Encapsulation equipment for assembly of semiconductors

(41) 8477.90.15, 8577.90.35, 8477.90.55, 8477.90.75 Parts of encapsulation equipment for assembly of semiconductors

(42) 8477.90.15, 8477.90.35, 8477.90.55, 8477.90.75 Parts of encapsulation equipment within the scope of this subdivision of this note

(43) 8479.89.84 Epitaxial deposition machines for semiconductor wafers

(44) 8479.89.84 Spinners for coating photographic emulsions on semiconductor wafers

(45) 8479.89.84 Apparatus for growing or pulling monocrystal semiconductor boules

(46) 8479.89.84, 8419.89.95 Chemical vapor deposition apparatus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47) 8479.90.94 Parts for apparatus for growing or pulling monocrystal semiconductor boules

(48) 8479.90.94 Parts for spinners for coating photographic emulsions on semiconductor wafers

(49) 8479.90.94 Parts of epitaxial deposition machines for semiconductor wafers

(50) 8479.90.94, 8419.90.95 Parts of chemical vapor deposition apparatus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51) 8480.71.40 Injection and compression mold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52) 8504.40.60, 8504.40.70, 8504.40.85 Static converter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53) 8504.50.40 Other inductors for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54) 8514.10.00 Resistance heated furnaces and oven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on semiconductor wafers

(55) 8514.20.80 Inductance or dielectric furnaces and oven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on semiconductor wafers

(56) 8514.30.60 Apparatus for rapid heating of semiconductor wafers

(57) 8514.90.80 Parts of resistance heated furnaces and oven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on semiconductor wafers; parts of apparatus for rapid heating of wafers; parts of furnaces and ovens of subheadings 8514.10 through 8514.30, inclusive

(58) 8515.80.00, 8479.89.84 Die attach apparatus, tape automated bonders and wire bonders for the assembly of semiconductors

(59) 8515.90.10, 8479.90.94 Parts for die attach apparatus, tape automated bonders and wire bonders for the assembly of semiconductors

(60) 8517 Electrical apparatus for line telephone or line telegraphy, including line telephone sets with cordless handsets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for carrier-current systems or for digital line systems; videophones; parts thereof

(61) 8517.50.10, 8471.80.40 Multimedia upgrade kit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the foregoing put up for retail sale and consisting of, at least, speakers and/or microphones as well as a printed circuit assembly that enables the ADP machines and units thereof to process audio signals (sound cards)

부 록

(62) 8517.50.10, 8525.10.10, 8528.12.92 Set top boxes having a communication function, a microprocessor-based device incorporating a modem for gaining access to the internet and having a function of interactive information exchange

(63) 8518.10.40 Microphones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 with a diameter not exceeding 10 mm and a height not exceeding 3 mm, for telecommunications use

(64) 8518.29.40 Loudspeakers, without housing,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 with a diameter not exceeding 50 mm, for telecommunications use

(65) 8518.30.10 Line telephone handsets

(66) 8518.40.10, 8518.90.20, 8518.90.60 Electric amplifiers when used as repeaters in line telephone product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subdivision of this note, and parts thereof

(67) 8520.20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68) 8523.11 Magnetic tapes of a width not exceeding 4 mm

(69) 8523.12 Magnetic tapes of a width exceeding 4 mm but not exceeding 6.5 mm

(70) 8523.13 Magnetic tapes of a width exceeding 6.5 mm

(71) 8523.20 Magnetic discs

(72) 8523.90 Other prepared unrecorded media for sound recording or similar recor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73) 8524.31 Discs for laser reading systems for reproducing phenomena other than sound or images

(74) 8524.39.40 Other discs for laser reading systems,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75) 8524.40 Magnetic tapes for reproducing phenomena other than sound or images

(76) 8524.91 Media for reproducing phenomena other than sound or images

(77) 8524.99.40 Other recorded media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78) 8525.10.90 Transmission apparatus other tha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or television

(79) 8525.20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80) 8525.40.40 Digital still image video cameras

(81) 8536.90.40 Terminals, electrical splices and electrical couplings, the foregoing that are connection and contact elements for wires and cables

(82) 8527.90.86, 8525.20.30, 8529.10.70, 8529.90.22, 8529.90.75, 8529.90.86 Paging alert devices, and parts thereof

(83) 8527.90.86 Portable receivers for calling, alerting or paging

(84) 8528.30.62, 8528.30.66, 8471.60.30, 8471.49.24 Projection type flat panel display units used with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which can display digital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central processing unit

(85) 8529.10.70 Aerials or antennae of a kind used with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and radio-telegraphy

(86) 8529.90.22, 8529.90.99 Parts of transmission apparatus

(87) 8531.20.00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quid crystal devices (LCD's) or light emitting diodes (LED's)

(88) 8531.90.15, 8531.90.75 Parts of apparatus of subheading 8531.20

(89) 8532 Electrical capacitors, fixed, variable or adjustable (pre-set);parts thereof

부 록

(90) 8533 Electrical resistors (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other than heating resistors; parts thereof

(91) 8534 Printed circuits

(92) 8536.50.70 Electronic AC switches consisting of optically coupled input and output circuits (insulated thyristor AC switches); electronic switches, including temperature protected electronic switches, consisting of a transistor and a logic chip (chip-on-chip technology)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olts;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eres

(93) 8536.69.40 Plugs and sockets for co-axial cables and printed circuits

(94) 8536.90.40 Wafer probers

(95) 8541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emitting diodes;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parts thereof

(96) 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assemblies; parts thereof

(97) 8543.11.00 Ion implanters designed for doping semiconductor materials

(98) 8543.81.00 Proximity cards and tags

(99) 8543.89.10 Apparatus for physical deposition by sputtering on semiconductor wafers

(100) 8543.89.10 Physical deposition apparatus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101) 8543.89.92 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

(102) 8543.90.10 Parts of physical deposition apparatus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103) 8543.90.10 Parts of apparatus for physical deposition by sputtering on semiconductor wafers

(104) 8543.90.64, 8543.90.84 Parts of ion implanters designed for doping semiconductor materials

(105) 8544.41.40 Other electric conductor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V, fitted with connectors,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106) 8544.49.40 Other electric conductor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V, not fitted with connectors,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

(107) 8544.51.70 Other electric conductors, for a voltage exceeding 80V but not exceeding 1,000V, fitted with connectors,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108) 8544.70.00 Optical fiber cables

(109) 9009.11.00 Electrostatic photocopying apparatus,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directly onto the copy (direct process)

(110) 9009.21.00 Other photocopying apparatus, incorporating an optical system

(111) 9009.91.00, 9009.92.00, 9009.93.00, 9009.99 Parts and accessories of photocopying apparatus of heading 9009

(112) 9010.41.00, 9010.42.00, 9010.49.00, 9010.50.60 Apparatus for the projection, drawing or plating of circuit patterns on sensitized semiconductor materials or flat panel displays

(113) 9010.90.7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apparatus of subheadings 9010.41.00 through 9010.49.00

(114) 9017.20.50 Pattern generating apparatus of a kind for producing masks and reticles from photoresist coated substrates

(115) 9017.90.00 Parts and accessories for pattern generating apparatus of a kind for producing masks and reticles from photoresist coated substrates

(116) 9018.11, 9018.12, 9018.13, 9018.14, 9018.19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including scinti-

부 록

graphic apparatus,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and sight testing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foregoing

(117) 9019 Mechano-therapy appliances; massage apparatus;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foregoing

(118) 9021 Orthop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h are worn or carried, or implanted in the body, to compensate for a defect or disability;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foregoing

(119) 9026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the flow, level, pressure or other variables of liquids or gases (for example, flow meters, level gauges, manometers, heat meters), exclud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headings 9014, 9015, 9028 or 9032;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foregoing

(120) 9027.20 Chromatographs and electrophoresis instruments

(121) 9027.30 Spectrometers, spectrophotometers and spectrographs using optical radiations (UV, visible, IR)

(122) 9027.5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UV, visible, IR) of heading 9027

(123) 9027.8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heading 9027 (other than goods of subheading 9027.10)

(124) 9027.90.45, 9027.90.54, 9027.90.64, 9027.90.84 Parts and accessories of goods of heading 9027, other than for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and microtomes

(125) 9030.40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and checking, specially designed for telecommunications (for example, cross-talk meters, gain measuring instruments, distortion factor meters, psophometers)

(126) 9030.82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

(127) 9030.90.64, 9030.90.84 Parts and accessories of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subheading 9030.82

(128) 9031.41.00, 9031.49.70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inspect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 or for inspecting masks, photomasks or reticles used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devices

(129) 9031.41.00 Optical stereoscopic microscopes fitted with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semiconductor wafer or reticles; photomicrographic microscopes fitted with such equipment

(130) 9031.49.70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measuring surface particulate contamination on semiconductor wafers

(131) 9031.80.40 Electron beam microscopes fitted with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semiconductor wafers or reticles

(132) 9031.90.54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of subheadings 9031.41.00 or 9031.49.70

(133) 9031.90.54 Parts and accessories of optical stereoscopic microscopes fitted with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semiconductor wafers or reticles; parts and accessories of photomicrographic microscopes fitted with such equipment

(134) 9031.90.70 Parts and accessories of electron beam microscopes fitted with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semiconductor wafers or reticles

참 고 문 헌

한-칠레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한-싱가폴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한-EFTA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한-ASEAN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김정수,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통상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29권 3호, 2004)

남성욱, 가속되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남북관계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발표문, 2006.4.20)

동용승, 2.13합의 이후 대북경협정책의 방향과 과제 (KDI 북한경제 리뷰 07-03, 2007)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7.8)

서헌재,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경협 · 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

참 고 문 헌

검토 (국제거래법연구 13권 1, 2004)

이영훈, 남북경협 의 현황 및 평가 (금융경제연구 281호, 2006)

조명철외,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년 7월).

최원목,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47-3, 2002.12.)

Won-Mog Cho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March 2003)

Won-Mog Choi,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v. 41 -3,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